

# I.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構造調整

## 1.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構造調整

### 1) 金融産業 構造調整의 原則

#### □ 金融機關 構造調整의 特徵

- IMF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와 IMF측과의 합의조항에 의거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었음.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금융기관의 조기퇴출을 유도함으로 써, 금융시장 정상화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임.
- 은행 및 중금사에 대한 우선 처리 및 은행권 구조조정중 지급불능에 처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즉시 정리함 (※부실금융기관 조기퇴출).
- 비은행금융기관 (증권, 보험, 신용금융, 신탁, 리스 등)은 대주주 책임 하에 증자 또는 자체 경영정상화 유도를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일부 대기업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2금융권 대주주의 증자 및 자본강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중임.
- 금융권별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sup>1)</sup>
  - 은행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8% 기준, 6%미만 제재)
  - 증권 : 영업용순자본비율 (※ 150% 기준, 100%미달 제재)
  - 중금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8% 기준)
  - 생명보험 : 지급여력비율(※ 0% 기준, -20%초과 경영개선명령)<sup>2)</sup>
  - 손해보험 : 지급여력비율(※ 0% 기준, -100%이상 경영개선명령)<sup>3)</sup>

1) 현재 투신사의 경우 내년도 구조조정의 핵심 분야로 계획되어 있음.

2) 동기준은 '98년 상반기중 부실 생보사 퇴출기준이며, '99.5월에 EU방식의 지급여력 개정에 따라 기준 100%, 0% 미만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적용됨.

3) 동기준은 '98년 하반기중 부실 손보사 퇴출기준이며, '99.6월에 EU방식의 지급여력 개정에 따라, 기준 100%, 0% 미만시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적용됨.

## □ 構造調整에 따른 不實 保險社의 處理 方式

- 기본적으로 해당 부실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양도 및 인수 (P&A : Purchase and Assumption) 방식, 자발적 인수·합병 (M&A), 계약이전 방식에 의한 우량금융기관으로의 강제이전 및 청산, 기존 대주주 지분의 국내의 매각 및 자본제휴 방식 등이 대표적임.
- 다만,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구조조정지원 공적자금 포함)의 최소화 및 퇴출로 인한 파급영향의 조기 차단 원칙과 해당 금융업종의 특징에 따라 처리방식의 선택됨.

<표 1>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형태

| 구 분                       | 주 요 사 항                                            |
|---------------------------|----------------------------------------------------|
| - 자산·부채의 취득 및 승계 (P&A)    | - 피인수기관의 일부분만 인수, 추가 부실발생이 높을 경우 선호                |
| - 자산의 분리 (우량자산 vs. 부실 자산) | - 피인수기관의 자산중 우량자산은 우량기관에게 넘기고 부실자산은 부실기관으로 이관하는 형태 |
| - 인수 및 합병 (M&A)           | - 부실기관의 직접적인 인수&합병                                 |
| - 계약이전 및 청산*              | - 일정수준의 부보범위내에서 보호조치이후 자산 및 부채를 정리                 |
| - 지분매각 및 제휴               | - 기존 지분의 부분 매각 및 신규자본 유입에 의한 자본제휴                  |

(주) 계약이전 및 청산에는 가교보험사에 의한 계약이전 및 청산이 포함됨.

## 2) 우리나라 金融産業의 構造調整 現況

### □ 金融圈別 構造調整 推進

-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음.
- 부실금융기관 정리, 부실채권 정리, 자본충실화, 인원 및 점포 등의

조직 축소로 요약됨.

- 특히 부실금융기관 정리의 경우 지금까지 퇴출·정리된 금융기관의 수는 자진해산을 포함하여 총 217개임 (※전체 금융기관의 약 10%).

<표 2> 각 금융권별 구조조정 추진 현황 ('99.6월 현재)

| 금융권별 | '97년말총<br>기관수(A) |       |                   |      |        |      | 현재<br>기관수        |
|------|------------------|-------|-------------------|------|--------|------|------------------|
|      | 인가취소             | 합병,소멸 | 영업정지              | 계(B) | B/A(%) |      |                  |
| 은행   | 33               | 5     | 4                 | -    | 9      | 27.3 | 24               |
| 중금   | 30               | 16    | 1                 | 1    | 18     | 60.0 | 12               |
| 증권   | 37               | 3     | -                 | 3    | 6      | 16.2 | 32 <sup>1)</sup> |
| 보험   | 50               | 4     | 1                 | -    | 5      | 10.0 | 45               |
| 투신   | 6                | 1     | -                 | 1    | 2      | 33.3 | 3 <sup>1)</sup>  |
| 신용금고 | 230              | 25    | 2 <sup>2)</sup>   | 14   | 41     | 17.8 | 189              |
| 신탁   | 1,666            | 1     | 130 <sup>3)</sup> | -    | 131    | 7.8  | 1,535            |
| 리스   | 25               | -     | 5                 | -    | 5      | 20.0 | 22 <sup>4)</sup> |
| 합계   | 2,077            | 55    | 143               | 19   | 217    | 10.4 | 1,860            |

(주) 1) 제일투신 증권사로 전환('99.1월)

2) 계약이전 포함

3) 도산및 해산 포함.

4) 한국리스(가교리스사로 5개리스사로부터 영업양수 '98.7), 메디캐피탈신규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o 각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 투신사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은 2000년에 추진될 예정임.

- 은행 :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하여 우량은행 양성화 추진(예: 대형 leading-bank) 및 은행간 짝짓기 방식 (예: 우량은행 + 부실은행, 또는 시중은행 + 지방은행 등)의 합병 추진

단, 일부 대형부실은행은 국내외 매각의 이전단계로서 정부 공적자금

先投入과 기존 주주지분에 대한 減資추진을 통해 우선 정상화 추진 이후 해외매각 추진중 (※서울은행, 제일은행).

- 보험 : 우량 생명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 (※생명보험회사 4개사) 및 합병 (※보증보험사)이 기추진됨.

특히 보험산업은 금년 1999년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핵심부문임 (※'99년중 일부 부실생보사의 추가정리 계획중).

- 증권 : 부실증권사 조기퇴출 및 업무정지, 청산 등으로 정리되었음.
- 리스 : 개별청산 및 가교사 (한국리스)로 자산·부채 이전되었음.

<표 3>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 구 분        | 구조조정 추진 현황                                                                                                                                                                  |
|------------|-----------------------------------------------------------------------------------------------------------------------------------------------------------------------------|
| 은행 (33개)   | - P&A방식 퇴출 5사 (동화, 동남, 대동, 경기, 충청)<br>- 합병 9사 (상업+한일, 하나+보람, 국민+장신, 조흥+충북외)                                                                                                 |
| 증권사 (37개)  | - 퇴출 3사 (고려, 동서, 한남투자)<br>- 영업정지 3사 (장은, 산업, 동방페리그린)                                                                                                                        |
| 보험사 (50개)  | - 퇴출 4사 (생보사 : 고려, 국제, 태양, BYC)<br>- 합병 2사 (보증보험 : 대한보증+한국보증 → 서울보증)<br>- 경영개선 명령 : 16개 (14개 생보사, 2개 손보사)<br>- 생보사중 경영개선 이행계획 진행중 중인 총 14개사중 '99년중 7개 생보사의 추가 정리 예정 (매각진행중) |
| 종금사 (30개)  | - 퇴출 16사 (경남, 경일, 고려, 삼삼, 신세계, 청솔 등)<br>- 합병추진 2사 (종금사+은행 : 현대+강원, 환외+외환)                                                                                                   |
| 투신사 (6개)   | - 인가취소 1사 (신세기)                                                                                                                                                             |
| 리스사 (25개)  | - 합병 소멸 5사 (동화, 동남, 대동, 중부 등)<br>- 가교사로 자산·부채 이전                                                                                                                            |
| 신탁 (1666개) | - 기존의 131개사외에 최근 울산의 방어진신탁 등 11개사 추가 퇴출 ('99.6)                                                                                                                             |

(주) 구조조정에서 제외된 일부 금융기관은 기존 자본금의 감자 후 신규자본 유입 또는 후순위차입 및 채권 발행, 지분매각 등을 통해 자기자본 강화 추진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2. 保險會社 構造調整의 現況 및 特徵

### 1) 保險市場開放 以前의 生保社 構造調整

#### □ 不實 生保社의 市場退出 經驗

- IMF 구제금융 이전까지 국내 보험산업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경험은 없었음. 다만 '60년대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일부 생보사의 경영부실 누적으로 인한 파산사례는 존재함.
- 당시 생보사의 파산사유는 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면허취소 및 계약이전에 의한 타보험사로의 피인수 형태로 이루어졌음.
- 동아('62), 협동('64), 고려('73)는 각각 경영부실 누적으로 피인수 및 공동관리체제 이후 계약이전에 의한 타사로 인수되었음.
- 단, 제일생명은 공동관리체제중에 주주 증자참여로 회생되었음.

<표 4> 우리나라 생보사의 정리 사례

| 회사명                   | 년도   | 파산사유                                                                                                                                             | 비 고                    |
|-----------------------|------|--------------------------------------------------------------------------------------------------------------------------------------------------|------------------------|
| 동아생명                  | 1962 | - '62년 설립후 경영부실 누적 피인수(고려생명)                                                                                                                     | 피인수                    |
| 협동생명                  | 1964 | - '58년 영업재개후 자본금납입 지연 및 누적부채의 급증, '61년부터 동방생명의 관리체제 유지<br>- '62년 관리해제후 면허취소 및 '64년 3개사 (대한, 동방, 대한교육보험)로 자산 및 계약이전                               | 면허취소, 계약이전             |
| 고려생명<br>(현재의<br>동아생명) | 1973 | - '47년 설립후 경영부실 및 보험금지급 지연 지속,<br>- '73년 면허취소이후 5개 생보사의 공동관리<br>- '73년 동해생명으로 계약이전<br>- 그후 동해생명은 피인수 (현재의 동아생명)<br>(※'80년 공영토건, '83년 동아그룹으로 피인수) | 면허취소, 계약이전, 피인수        |
| 제일생명                  | -    | - '58년이후 과도한 사업비지출로 경영악화,<br>- '60년 강제관리 (3개 생보사에 의한 공동관리) 및 5개 시중은행 공동출자관리중 구주주들의 자본금납입 성공 (증자 성공)<br>- '63년 영업재개후 현재에 이름                       | 구주주들의 증자참여, 영업재개 (정상화) |

## 2) 保險市場開放 以後의 生保社 構造調整

### □ 生保社의 自發的인 市場退出

- 보험시장의 대내외개방이후 IMF사태로 시작된 금융산업 구조조정 이전까지는, 단지 2개 외국계 생보사의 자발적인 계약이전에 의한 시장 퇴출만 발생하였음.
- 미국계 AFLAC(→'91년 교보생명), Georgia(→'92년 Netherland생명 : 현재 ING)이 사업철수를 위해 계약이전이후 지점폐쇄를 한 바 있음.
- 또한 일부 합작사<sup>4)</sup>들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기존의 지분에 대한 외국합작사와의 지분조정 등의 변경이 있었을 뿐임.

### □ 構造調整에 의한 不實保險社 整理 現況

- '98. 6월에 지급여력 및 향후 정상적인 경영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18개 생보사, 2개 손보사, 2개 보증보험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 '98. 8월에 상기회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서에 대한 평가결과에 의거 행정조치됨 (※4개 부실생보사 영업정지후 우량사로 계약이전).
- '98. 9월 이후에 생보사(14개) 및 손보사(원수사 2개, 보증보험 2개)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 작업 및 후속조치가 진행되었음.
- 생보사 :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및 이행각서 제출대상사 (총 14개사)는 FY'98말 기준으로 금감위에서 결정한 지급여력비율 개선목표를 달성해야 함. (※'99.5월 지급여력기준 개정시 향후 2000.9월까지 유예)
- 손보사 : 2개 원수사에 대한 경영개선 이행계획 촉구 및 2개 보증사는 1개사 (서울보증보험사)로 합병함으로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음.

4) 동양메네피트▶동양, 동부에트나▶동부(Atena▷Axa), 코오롱메트로▶MetLife

<표 5> 보험회사의 제1차 구조조정 현황

| 구 분  |               | 해당회사                              | 지급여력부족비율  |
|------|---------------|-----------------------------------|-----------|
| 생명보험 | 영업정지 및 퇴출     | 국제, BYC, 태양, 고려 (4개사)             | 20% 초과    |
|      |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 조선, 동아, 국민, 한국, 한덕, 태평양, 두원 (7개사) | 10~20% 미만 |
|      | 경영개선 이행각서 제출  |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7개사)  | 0~10% 미만  |
| 손해보험 | 영업정지 및 강제합병   | 한국보증, 대한보증 (2개사)*                 | 10%미만     |
|      | 경영개선 이행계획서 제출 | 동부, 해동 (2개사)                      | 50~90%    |

(주) \*98. 11월 : 한국보증 + 대한보증 → 서울보증으로 강제합병

<표 6> 지급여력비율 개선 목표 ('98년 하반기 기준)

| 지급여력비율 | 이행시기     | 개선목표 (*금감위 제시)                              |
|--------|----------|---------------------------------------------|
| 생명보험   | 1999.3월말 | ▶ 지급여력부족비율 <u>10% 미만</u> 으로 개선              |
|        | 2000.3월말 | ▶ 지급여력부족비율 <u>5% 미만</u> 으로 개선               |
|        | 2000.9월말 | ▶ 지급여력비율 <u>충족 (0% 이상)</u>                  |
| 손해보험*  | 1999.3월말 | ▶ 지급여력비율 <u>100% 이상</u> 개선 (* '99.3월 개정 0%) |

(주) \* 손해보험의 경우 '98. 2월말에 지급여력비율제도가 신설되었음. 따라서 생명보험과 달리 1년간의 유예기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동수치가 반드시 '99.3월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개선목표라고 할 수는 없음.

○ 결국 보험권의 구조조정은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및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의거하여 결정되었음.

- 총 6개사 (생보사 : 4개, 보증보험사 : 2개)가 1차 퇴출되었고, 향후 '99. 3월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제2차 퇴출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국내외매각 및 인수합병 방식)

□ 支給餘力制度 改善 (生保社)에 따른 追加 構造調整 豫想

○ 당초 정부와 IMF와의 합의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제도 강화를 위한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되는 체제로 개정될 상황이었음.

- 특히 EU방식의 최소지급여력 (Minimum Solvency Margin) 도입이 예상되었는 바, 마침내 '99. 5. 24일 생보사 지급여력제도 개정시, EU 방식의 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었음.

- EU 방식의 최소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의 자기부담 리스크를 크게 금리 및 자산리스크(C2 및 C3)와 보험리스크(C1)로 구분하여, 책임준비금 및 위험보험금에 대한 일정수준의 자기부담 비율계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를 최소지급여력기준으로 하고 있음.<sup>5)</sup>

○ 한편 생보사 건전경영지도와 관련하여 타금융권과 달리 별도의 경영지도비율이 없지만, 경영실태평가에 의한 등급결과를 종합하여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안이 마련중임. 이 중에서 아직까지는 지급여력비율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음.

- 즉, 생보사의 경영실태평가등급을 총 5개의 부문으로 분류하여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음. 총 5개 부문은 다음과 같음.

- 지급여력비율(30점), 자산건전성(20점), 수익성(15점), 유동성(15점), 경영관리(20점)이며, 종합평가등급은 총 5개등급으로 구분됨.

- 총 5개 항목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이외에 각 부문별 평가등급이 적용됨으로써 과거제도와 비교시 상당수준 개정되는 방향으로 추진중임.<sup>6)</sup>

---

5) 즉,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은 “책임준비금의 4% + 위험보험금의 0.3%” 현태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고 pp.9의 생보사 지급여력제도의 개정 <'99. 5. 24> 내용 참고하기 바람.

6) 현재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는 폐지되었고, 새로이 은행의 CAMEL방식 경영평가제도를 이용하여 마련된 경영실태평가제도(안)이 도입될 예정임.

자료 : 양성문, “생보사 경영실태평가제도에 관한 소고”, 「생협」, 생명보험협회, 1999. 5월호, pp.51~55

- 한편 FY'98 결산부터 상품유가증권중 상장주식의 시가평가(50%) 및 대손충당금 적립강화(100%)가 적용되었고, FY'99에는 100% 시가평가 하게 되어 있어 생보사 지급여력의 악화가 예상됨.

#### □ 生保社 支給餘力制度 改正 主要內容 ('99.5.24)

##### ○ 지급여력제도 관련 보험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 지급여력 확보기준 : “지급여력기준에 대한 지급여력의 비율이 0% 초과되어야 함” → “지급여력기준이상의 지급여력을 확보해야함”  
(※보험감독규정 제25조 제1항)

- “지급여력기준”은 다음의 각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7)

(※보험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 ①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x 책임준비금 위험계수 (4.0%) x 소정비율

- ② 위험보험금 x 보험위험계수의 소정비율

- 단, 위험보험금 및 보험위험계수, 소정비율은 다음과 같음.

- 위험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책임준비금) +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일반사망보험금액) 으로 함.8)
- 보험위험계수 : 위험보험료/보험가입금액(위험보험금) x  $\sum$ { (위험별) 보험금지급율 x (위험별)보험금점유율 x (위험별)자기부담율}9)
- 소정비율 : 총 10단계로서 각 시기별 비율은 <표 7>과 같음.

7) 단, 종업원퇴직적립보험, 퇴직보험 및 특별계정으로 운용되는 실적배당상품은 본 조항 (보험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의 지급여력기준 산출대상에서 제외함.

8) 즉, 일반상품의 경우는 (보험가입금액 - 책임준비금)으로 하고, 금리연동형상품의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일반사망보험금액)으로 하여 두가지를 합한 금액이 위험보험금으로 함.

9) 위험 :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장애, 질병/입원으로 구분함.

위험보험료 : 직전1년간 수입된 위험보험료(재보험 출제전)

지급보험금 : 직전 1년간 발생한 위험에 대한 지급보험금(수입보험금 수령전, 소멸계약의 책임준비금 미차감)

보험금지급율 : 지급보험금 / 위험보험료

보험금점유율 : 지급보험금중 각 위험이 차지하는 지급보험금의 점유비

자기부담율 : (지급보험금 - 수입재보험금) / 지급보험금

**<표 7>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산정적용 소정비율**

| 구 분      | 소정비율   | 구 분      | 소정비율   |
|----------|--------|----------|--------|
| 1999.9월말 | 6.25%  | 2002.3월말 | 50.00% |
| 2000.3월말 | 12.50% | 2002.9월말 | 62.50% |
| 2000.9월말 | 18.75% | 2003.3월말 | 75.00% |
| 2001.3월말 | 25.00% | 2003.9월말 | 87.50% |
| 2001.9월말 | 37.50% | 2004.3월말 | 100.0% |

- “지급여력”은 다음 ①의 합계금액에서 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보험감독규정 제25조 제3항)

① 합산항목 : 총 7개항목

- 납입자본금,
- 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 - 미상각신계약비” 초과적립금,
- 대손충당금중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적립된 대손충당금,
- 자본조정,
- 후순위차입금 (단, 자본금 이내 금액만 인정) 등

② 차감항목 : 신계약비, 무형자산중 영업권 등 총 2개항목

○ 지급여력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감독행정 조치의 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 (※보험감독규정 제28조, 제28조의 2, 3)

- 경영개선권고 <제1단계>

: 지급여력부족비율 0%~10% → 지급여력비율 50%~100%

- 경영개선요구 <제2단계>

: 지급여력부족비율 10%~20% → 지급여력비율 0%~50%

- 경영개선권고 <제3단계>

: 지급여력부족비율 20% 이상 → 지급여력비율 0% 미만

(※단, 각각의 단계별 감독행정 조치상의 내용은 전과 동일함.)

o 금번에 개정된 지급여력제도는 '99.9월말부터 새로이 적용됨.

단, '98.8월 금감위 결정에 의거 금감위로부터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  
각서(7개사) 및 이행계획서(7개사)를 제출한 총 14개사는 현재 경영정  
상화계획이 이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해당 14개사의 경우는 2000.9월까지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한 보험감독  
규정 제28조 및 제28조의3 규정의 적용을 유예함.

(※이행각서 회사 : 한일, 신한, 한성, 대신, 동양, SK, 금호)

(※이행계획서 회사 : 조선, 동아, 국민, 한국, 한덕, 태평양, 두원 )

o 개정된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의 의의 및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과거 준비금적립 충실화에 의한 지급능력 확보면에서 제반 리스크를  
총괄하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EU의 최소지급여력제도 형태를 갖추으로써 국제적 정합  
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음.
- 위험보험금과 관련하여 보험위험계수의 산출방법을 세분화함으로써,  
회사별 보장성보험의 상품별 특성 및 판매구성상의 차이로 인한 문  
제를 해결하였음.
-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급여력기준액 산정비율을  
시기별로 유연성을 부가하였고,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현재 경영개  
선 이행계획중인 회사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개정 지급여력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지  
급여력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 II. 諸外國의 保險會社 構造調整 事例

### 1. 諸外國의 金融産業 構造調整 特徵과 敎訓<sup>10)</sup>

#### 1) '80年代 이후 金融産業 構造調整의 特徵

##### □ 金融産業 構造調整의 原則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과정중 초래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정리대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정리 방식을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금융기관의 부실 여부를 판정함으로써 부실판정에 대한 자의성 및 사후 부작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였음.
-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성 판단이후 희생불가능(non-viable)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함과 동시에, 희생가능(viable)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확보 방안을 강구하였음.

##### □ 不實 金融機關의 特徵 및 整理 方式

- 불건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영업행태의 악순환은 결국 유동성부족으로 이어지고, 그후 지급불능사태 (Insolvency)를 야기함.
- 또한, 지급불능사태는 전염효과에 의해서 다른 금융기관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하시켜 예금인출사태(Bank Run) 유발과 결국 금융

---

10) \* IMF 등이 '80년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실시한 30여개 국가(예: 멕시코, 스페인, 스웨덴, 필리핀 등)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중 일부내용 재정리.

\*\* 외국 구조조정사례 보고서가 대부분 은행중심의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것이며, 보험산업의 구조조정을 별도로 취급한 자료는 없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내용을 정리하였음.

중개기능의 마비를 초래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의 추가손실 및 금융중개기능의 급속한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유동성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폐쇄 등 조기에 정리하여 퇴출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o. 정리 방법은 ①청산(liquidation), ②가교금융기관(bridge company)으로 청산, ③제3자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적 국유화(nationalization), ④인수 및 합병(M&A), ⑤자산 및 부채이전(P&A) 등이 대표적임.
- 각각의 처리방식에 대한 선택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었으며, 다만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서 預金代支給 또는 不實債權 買入 등 정부지원이 상당부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임.

#### □ 回生可能(viable) 金融機關의 構造調整

- o 실질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에서 회생가능(viable)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財務構造調整(financial restructuring)과 運營構造調整(operational restructuring)으로 구분됨.
- o 財務構造調整 : 금융기관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서 유동성, 수익성, 순자산가치 증대를 유도하는 구조조정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음.
- 대차대조표구조 개선방식 (stock approach) :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또는 후순위차입) 등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을 의미함  
(※외국경험상 유상증자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됨.)
- 손익구조 개선방식 (flow approach) : 운영경비 절감 등 금융기관 자체 노력과 정부지원 방법이 있으나,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각종 부작용<sup>11)</sup>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자체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11) 중앙은행의 장기유동성 공급 증가, 기준을 인하, 금리규제 등을 통한 예대금리차의 확대에 의해 거시경제 안정성 저하, 역선택문제 발생이 가능함.

- 運營構造調整 : 재무구조조정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구조조정임.
  - 재무구조 조정이후에도 수익성 및 건전성 악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 및 내부지배구조(internal governance) 개혁과 외부 지배구조(external governance) 강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음.
  - 경영합리화 : 자회사 및 계열회사의 매각 및 폐쇄, 점포 등 대내외 조직의 축소, 인원 감축 및 재배치 등 비용절감
  - 내부지배구조 개혁 : 경영진 및 기존 대주주의 교체 및 경영부실에 따른 손해보상책임제도의 강화
  - 외부지배구조 강화 : 시장경쟁원리 적용(진입·퇴출 개선), 내부통제(사외이사 도입) 및 감사기능(audit) 강화, 공시제도 및 회계제도 개선 및 선진화

## 2) 主要國 金融産業 構造調整의 敎訓

### □ 構造調整計劃의 樹立 및 執行

- 금융기관 건전경영을 저해하는 각종 내부문제 및 회계·법률·감독제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의 개선방법이 필요함.  
(※성공사례 : 스웨덴, 스페인, 필리핀 등)
- 구조조정 속도의 단기화 및 속도화가 요구됨.  
(※성공사례 : 칠레, 코트니브와르 등)
- 엄격한 시장퇴출 제도가 필요함. 특히 대형금융기관이라도 부실 금융기관으로 판정시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필요가 있음.  
(※성공사례 : 미국, 라트비아, 코트니브와르 등)
-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주도기관 (lead agency)이 있어야 함.  
(※성공사례 : 미국, 스페인, 스웨덴 등의 예금보험기구)

## □ 構造調整 手段의 選擇

-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금융기관중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였으며, 재정지원 수단으로는 부실채권과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로 교환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됨.  
(※성공사례 : 필리핀, 스페인, 스웨덴 → 운영구조조정 연계 실시)  
(※실패사례 : 타자니아, 모리타니아 → 운영구조조정 연계미실시)
-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최소화하되,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기관에는 유동성공급 지원 금지하였음.
- 금융기관의 손실에 대한 분담 배분 (정부, 금융기관, 일반국민)처리가 구조조정 성패를 좌우함.  
(※미국, 스페인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예금보험기구가 주도)
-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구조조정보다 달성하기가 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構造調整 財政支援 方法

- 재정지원 규모의 최소화하여야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손실의 공평성 제고, 도덕적해이(moral hazard) 방지가 가능함.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공공부문(공적자금)으로 구조조정 비용을 보전하였음.  
(※스웨덴 : 자산관리와 민영화, 라트비아 : 회수자산 부분 보상)
- 구조조정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재정의 건전성 유지가 필요함.  
(※성공사례 : 필리핀, '83년 9% → '86년 4.8%)
- 재정지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함.  
(※성공사례 : 폴란드, 공공은행과 공기업의 종합구조조정 연계)
-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구조조정 비용에 대한 투명한 기록이 필요함.

## □ 構造調整 手段과 構造調整 成果의 關係

-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금융산

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스웨덴, 스페인, 필리핀 등 1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국가가 사용한 주요 구조조정 수단과 실제 구조조정 성공 여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가 <표 8>로 요약됨.<sup>12)</sup>

<표 8> 구조조정 수단과 성공여부와 관계표

| 구분               | 구조조정<br>가구 :<br>중앙은행<br>유일 | 중앙<br>은행의<br>유동성<br>공급 | 대출금<br>가치<br>회생 | 부실<br>금융<br>기관<br>폐쇄 | 부실<br>금융<br>기관<br>합병 | 민영화 | 기업<br>구조<br>조정과<br>연계 | 부실<br>채권과<br>국제<br>교환 | 정부의<br>증자<br>참여 | 주주와<br>경영권<br>의<br>유안 |
|------------------|----------------------------|------------------------|-----------------|----------------------|----------------------|-----|-----------------------|-----------------------|-----------------|-----------------------|
| 성공 <sup>1)</sup> | 20                         | 40                     | 100             | 80                   | 60                   | 100 | 40                    | 100                   | 60              | 100                   |
| 보통 <sup>2)</sup> | 57                         | 86                     | 86              | 57                   | 86                   | 100 | 71                    | 86                    | 57              | 71                    |
| 부진 <sup>3)</sup> | 100                        | 100                    | 67              | 33                   | 33                   | 33  | 0                     | 100                   | 33              | 33                    |

(주) 표의 수치는 각 그룹별 구조조정 수단으로 사용한 국가의 비율

- 1) 스페인(80), 필리핀(84), 스웨덴(91), 코트디브와르(91), 페루(91)
  - 2) 칠레(83), 가나(89), 이집트(91), 핀란드(91), 폴란드(93), 헝가리(93), 한국(93)
  - 3) 쿠웨이트(92), 탄자니아(92), 모니타니아(93)
- 단, ( )안의 수치는 구조조정의 시작연도임.

(자료) Dziobek, C. and C. Pazarbasioglu, "Lesson and Elements of Best Practice", System Bank Restructuring and Macroeconomic Policy, ed. by Alexander W., Davis J., Liam P., and C. Lindgren, IMF, 1997

#### □ 最近의 아시아國家 構造調整 推進狀況 比較

-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비슷한 시기('97년 하반기)에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 등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긴축 재정·통화정책으로 高金利 및 高換率을 경험한 바 있음.
- 아시아 각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크게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제도개혁, 사회안전망 구축,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됨.

12) 한국의 경우 당시에 구조조정이 없었으나,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분석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 각국의 공통점은 금융구조조정 전담기구<sup>13)</sup> 설치, 부실금융기관 퇴출 및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확대, 부실기업 정리,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법규정비 등을 추진하였음. (※<표 9> 참조)
- 특히 금융산업의 경우 일차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혁 등 감독·규정체계의 국제수준의 정합성 제고로 요약됨.

<표 9> 아시아 주요국 구조조정 추진상황

| 구분        | 금융부문                                                                                                                                                                                                                                                                                      | 제도개혁                                                                                                                                                                                                       |
|-----------|-------------------------------------------------------------------------------------------------------------------------------------------------------------------------------------------------------------------------------------------------------------------------------------------|------------------------------------------------------------------------------------------------------------------------------------------------------------------------------------------------------------|
| 한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금융기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 은행, 16개 중금사, 6개 증권사, 4개 생보사등 총94개 금융기관 퇴출</li> <li>- 합병유도 (보증보험사 등 9개 금융기관)</li> <li>- 서울·제일은행 해외매각 추진</li> </ul> </li> <li>▶ 재정지원 확대</li> <li>- 재정지원금 : 총 43.3조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감독기구 : 금융감독원 설립</li> <li>- 특수은행, 개발기관 감독도 총괄</li> <li>▶ 회계제도 투명성 제고</li> <li>- 시가회계 도입, 공시제도 선진화</li> <li>-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li> <li>▶ 금융산업관련 제반 법규 개정</li> </ul> |
| 태 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금융기관 정리</li> <li>- 56개 금융기관 퇴출</li> <li>- 4개 은행 국유화 및 국내외 매각 추진</li> <li>- 금융기관 부실채권 분류기준 강화</li> <li>▶ 모든 금융기관과의 “자본충실화” 약정서 체결</li> <li>▶ 재정확대의 이자부담 : GDP의 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재건청 및 자산관리공사 신설</li> <li>▶ 태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li> <li>▶ 파산법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99.3월말)</li> <li>- 은행법, 금융기업법 등 개정</li> </ul>                                  |
| 인도<br>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책금융기관의 개혁</li> <li>- 4개 국영은행의 합병계획</li> <li>- 부실채권의 매각처분</li> <li>▶ 상업은행의 개혁</li> <li>- 38개 은행 폐쇄</li> <li>- 5개은행 영업축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재건청 신설</li> <li>▶ 인도네시아 외채조정기구 신설</li> <li>▶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li> <li>▶ 은행법 개정</li> </ul>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정보」, 제99-6호, pp.50~51

13)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FSC), 태국의 금융재건청(FRA), 인도네시아의 은행재건청(IBRA) 등임. 참고로 일본의 경우도 금융재생위원회(FRC)가 있음.

## 2. 美國과 日本의 保險社 倒産事例 및 整理

### 1) 美國 大型保險社의 倒産과 整理

#### □ '84~'88년 損保社 倒産 増加

- '60년대 이후 '80년대 중반이전까지 연평균 4건에 불과한 도산건수가 '80년대 중반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음.
- 주요 도산사유는 경쟁심화로 인한 과도한 보험료율의 인하, 언더라이팅기준 완화를 통한 무리한 계약인수 확대, 특히 경영위탁회사인 전속대리점 (Managing General Agent)에 대한 관리 실패, 재보험 실패, 준비금적립의 불충실 등으로 요약됨.

#### □ '89~'94年 中大型 生保社의 倒産 増加

- '70~'80년대에 도산한 보험사의 2/3가 소형보험사였음.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에는 중대형보험사의 도산이 발생했고, 특히 '91년에는 대형사 6개사가 연쇄적으로 도산하였음. (\*<표 10> 참조)

<표 10> 미국 보험사의 도산건수 추이

| 년 도  | 건 수      |     | 년 도  | 건 수     |     |
|------|----------|-----|------|---------|-----|
|      | 생보사      | 손보사 |      | 생보사     | 손보사 |
| 1980 | 9 (n.a)  | 6   | 1989 | 42 (27) | 54  |
| 1982 | 10 (n.a) | 8   | 1991 | 58 (23) | 44  |
| 1984 | 11 (5)   | 27  | 1993 | 27 (11) | 37  |
| 1985 | 9 (4)    | 54  | 1994 | 35 (7)  | 18  |
| 1986 | 14 (6)   | 30  | 1995 | 12 (1)  | 7   |
| 1987 | 20 (8)   | 25  | 1996 | n.a (1) | 9   |
| 1988 | 19 (7)   | 42  | 1997 | 4 (n.a) | 24  |

(주) ( ) 수치는 복수주에 영업 license를 갖는 대형보험사의 파산건수임.

(자료) A.M. Best, Best's Review, '99. 3 (손보판)

A.M. Best, Special Report, A.M. Best's Insolvency Study : Life/Health Insurer 1970 - 1991,

□ 美國 生保社의 倒産原因 및 特徵

- '70년대 후반이후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고물가-고금리 상태가 도래했으며, 이에 따라 MMF등 고금리상품 구입을 위해 기존 계약자의 전 통형 종신보험의 해약과 계약자대출이 급증하였음.
- 생보사들은 자금유출에 대처하기 위해 확정금리부상품, 투자보증부계약(GIC), 변액보험 등 금리민감형상품을 집중판매하였음.
- 이와 같은 금리민감형상품의 수익률 보전을 위해 고위험-고수익형 투자전략을 지향하게 되었고, 결국 상업용부동산 및 투자부적격채권(junk bond)에 과도하게 투자하였음.
- 그러나 지난 '89년의 Black Monday이후 부동산시장의 장기침체, junk-bond 시장의 붕괴가 발생하면서, 투자손실의 급증과 그에 따른 자산규모 축소, 그리고 수입보험료 감소가 가중되어 이들 대부분의 중대형급 생보사가 파산한 것임.

<표 11> 1991년에 도산한 중대형 생보사 현황

(단위 : 백만\$, %)

| 생보사                      | 자산규모*<br>(정부가 기준) | 수입보험료*     | 전년대비 증감율* |       |
|--------------------------|-------------------|------------|-----------|-------|
|                          |                   |            | 자산        | 수입보험료 |
| Mutual Benefit           | 13,842 (21)       | 3,201 (18) | 16.2      | 13.3  |
| Executive Life **        | 10,167 (33)       | 354 (138)  | -22.8     | -44.5 |
| Executive of Life NY**   | 3,172 (90)        | 94 (311)   | -18.7     | -24.9 |
| First Capital Life***    | 4,458 (69)        | 511 (104)  | -6.0      | -47.2 |
| Fidelity Bankers Life*** | 4,069 (77)        | 664 (87)   | 14.0      | -2.6  |
| Monarch Life             | 4,478 (68)        | 267 (127)  | -12.7     | 15.2  |

(주) \* 1990년 기준

\*\* 지주회사 : First Executive Corporation

\*\*\* 지주회사 : First Capital Holding corporation

(자료) <http://www.cato.org/pubs/regilation/reg15na.htm>

- 당시의 파산원인은 대내외적 경쟁 심화, 고이율보증상품의 판매 및 고이율보장을 위한 상업용부동산, junk bond 및 파생상품 등 위험자산에 대한 무리한 투자운용 확대가 가장 결정적임.
- 또한 과거처럼 소형사가 아닌 복수지점 영업면허를 가진 중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연쇄적인 파산은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부정적 파급영향이 연쇄적으로 확산된 것임.

#### □ 倒産 保險會社の 整理

-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시 개별적인 경영목적에 의거 해당기업의 전체 또는 기업분할 (business line별 매매) 방식에 의한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어 있음.
- 그러나 부실회사 정리와 관련하여 제도상으로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보험산업은 다른 일반산업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
  - 즉, 일반기업의 도산시에 적용하는 미국 연방파산법(US Bankruptcy Code) 또는 회사법(Corporation Code) 대신에 全美保險監督官協議會 (NAIC)에서 제시한 모델에 의거하여, 제정된 통일청산법 (Uniform Liquidation Act) 또는 청산법(Liquidation Act)의 적용을 받음.
  - 두 법안의 경우 모두 부실 보험회사의 재건(Rehabilitation) 또는 청산(Liquidation), 정리(Conservation), 해산(Dissolution)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취급하고 있음.<sup>14)</sup>
- 미국의 부실 보험회사의 처리 방법중 특히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정리계획에 있어서 재조직(reorganization), 상호회사화(mutualization), 재보험처리(reinsurance), 마지막으로 재건계획(rehabilitation)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하고 있음.

14) 뉴욕주 보험법에서는 제7401~제7436 에 걸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이중 재건계획의 경우는 우선 보험감독청, 전미 생명건강보험보통보증기구(NOLHGA)<sup>15)</sup> 및 각 주의 보험보증공사<sup>16)</sup> 및 보험보증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실시됨.

o 도산보험회사의 정리는 대부분 해당지역 보험감독청의 관리하에서 회사의 일부분이 타보험사로 매각되어 피인수되거나, 각 해당지역의 보험보증기구의 자금지원하에 재건계획이 진행됨.

- Executive Life : 프랑스 투자자에게 불량자산매각(35.5억\$) 및 일부 계약이전 추진, 보험보증기금에서 약 20억\$ 지원, 단, 계약자 1인당 한도 10만\$)
- First Capital Life : 회사의 상당부분 기매각 완료
- Executive of Life NY : Metropolitan Life에 피인수(※회사 1/2부분)
- Monarch Life : Merrill Lynch에 부분매각 및 추가인수기업 모색중
- Mutual Benefit 및 Fidelity Bankers Life : 매각추진 협상중

#### □ 美國의 不實 生保社 倒産處理의 事例

- o 미국의 도산사례중 Executive Life Co. (이하 ELIC)와 Mutual Benefit Co. (이하 MBL)의 처리 절차 및 정리방안을 살펴보기로 하겠음.
- o 여러회사중 상기 두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두 회사가 미국 생보업계내의 전형적인 중대형급 생보사라는 점
  - '97. 4월에 도산한 일본 日産生命의 도산원인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

15) NOLHGA (National Organization of Life and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은 복수주에서 영업을 하던 보험회사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주의 생명보험/건강보험보증기구와의 조정 및 협의를 담당함.

16) 뉴욕주의 경우 생명보험보증공사(The Life Insurance Guaranty Corporation)의 보증기금(guaranty fund) 및 손해보험의 보험안정기금(property/casualty insurance security fund 및 public motor vehicle liability security fund)으로 구분되어 있음.

- ELIC의 파산처리 방안이 미국에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sup>17)</sup>라는 점과, 다만 MBL의 파산처리 방안이 비록 ELIC의 다르지만, 파산회사의 새로운 인수회사(매수측)가 없는 상황에서 인수준비 회사를 사전에 만들었다는 점에서 日産生命의 파산처리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임.

#### Executive Life사(以下 ELIC)의 倒産 處理

- o '91. 4월 법원의 인가를 받아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청은 동사를 관리 산하에 두었고, 해약 및 계약자대출의 일부 업무를 중지시켰음.  
(※ 단, 사망보험금의 100%, 개인연금의 70%의 금액지급만 인정)
- o 파산회사 ELIC에 대한 처리방안중 회사규모를 감안하여, 계약자보호를 위해서 보험감독청, 전미보험보증기금(NOLHGA), 각주의 보험보증기구(insurance guaranty fund)가 공동으로 재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건계획의 최종결정은 관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 o ELIC의 재건계획은 '93.9월부터 향후 5년간 실시됨.
- o ELIC의 불량자산은 일단 France 투자가에게 매각된 후, 나머지의 자산 및 계약은 France 등의 자본가가 소유한 Aurora National사(Aurora National Life Assurance Company)로 포괄이전 되었음.<sup>18)</sup>
- o 계약자의 입장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선 계약자는 재건계획에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재건계획에 참가하지 않으면, 거액의 해약공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자(92%)가 재건계획에 참가했음.

- 
- 17)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생보사 파산처리 방안은 해당지역의 보험감독청의 관리체제하에서 도산회사의 기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보험사에 포괄인수시키는 것이며, 이때 계약자 이익의 확보여부를 중시하며, 자금확보상 필요시 보험보증기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짐.
- 18) France의 자본가등이 ELIC를 구제한 이유는 이번 기회로 미국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목적임. 참여방법은 종래 행하여지고 있는 Paper Company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자를 가지고 있는 기존 보험회사의 매수임.

- ELIC의 재건계획 참가자는 보험보증기금의 급부금 이외, Aurora National 생명의 자본에서 생기는 이익이 분배됨. 또한 계약자대출에 관해서는 해약환급금의 50%까지를 한도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3만 \$를 상한으로 해약환급금 전액이 인정되었음.
- 한편 해약의 경우 환급금은 채감식에 따라 삭감되며, 또 전체의 8%를 차지하는 재건계획 미참가자에게는 GIC의 계약금액의 70~86%만 지불되도록 하였음.<sup>19)</sup>

<표 12> 해약환급금 공제율 (ELIC 경우)

| 년 도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
| 보증대상계약   | 구분 A | 10.0 | 10.0 | 9.0   | 7.0  | 5.0  |
|          | 구분 B | 12.5 | 12.5 | 11.25 | 8.75 | 6.25 |
|          | 구분 C | 15.0 | 15.0 | 13.5  | 10.5 | 7.5  |
| 보증대상의 계약 |      | 10.0 | 10.0 | 9.0   | 7.0  |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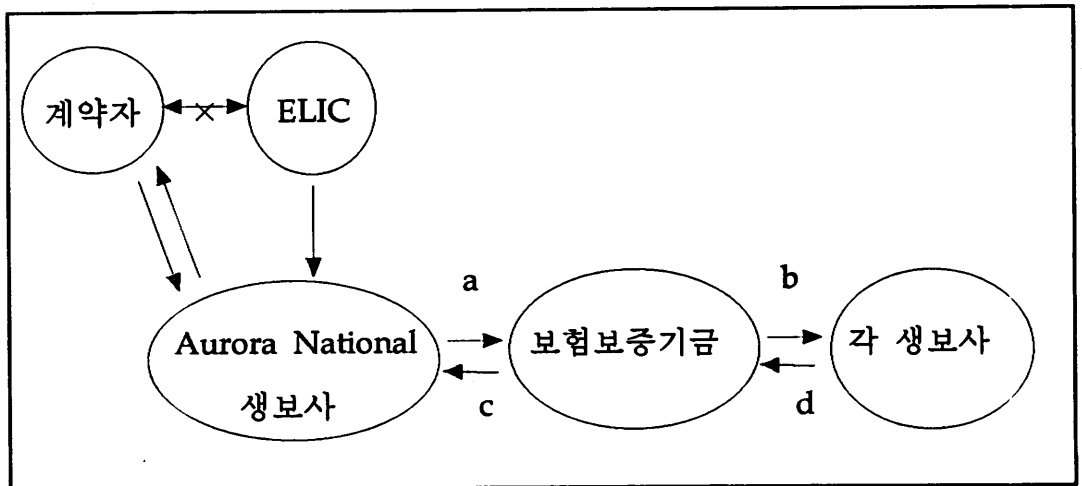
(주) 구분 A : Alabama 등 20주,  
구분 B : Alaska, Arkansas의 21주  
구분 C : California, New York의 6주가 포함된다.

-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급부에 있어서 재건계획에 참가하는 계약자의 보험금액은 100% 보증되도록 하였고, 각 보험보증기금은 Aurora National생명에 급부금을 지불함.
  - 다만, 계약자의 책임준비금 등이 보험보증기금의 보증한도액을 넘는 경우<sup>20)</sup> 계약자에게는 초과분의 일부가 Aurora National생명에 의해서 지급됨 (※<그림 1> 참고).
  - 재건기간중의 5년간은 매년 다음의 순서로 Aurora National생명은 보
- 19) GIC은 보험보증기금의 대상외이기 때문에, 그 계약자 (대부분 은행)가 대부분 재건계획에 참가하지 않았음.
- 20) 각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시간주 처럼 급부금별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각각 최고한도를 명시하거나, 또는 뉴욕주처럼 총액한도 (50만\$)만 제한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가 있음.

협보증기금으로 부터 급부금을 받음.

- ① Aurora National생명은 계약자에게 지불한 보험금등의 전액을 보험 보증기금으로 보고
- ② 동보고에 의거, 각주의 보험보증기금은 보증대상액을 해당 주에서 영업을 하는 각 생보사에서 부과금으로 징수<sup>21)</sup> (※<그림 1> b, c)
- ③ 동부과금을 Aurora National생명에게 지불 (※<그림 1> d)
- ④ 5년 경과후, 보험보증기금은 보증해야 할 책임준비금의 나머지 전액을 Aurora National생명에게 지불

<그림 1> 보험보증기금의 급부방법 (ELIC의 경우)



#### Mutual Benefit Life (以下 MBL) 倒産 處理

- '91. 7월 MBL은 뉴저지주 보험청에 관리명령의 발동을 요구했음. 이후 보험청의 관리체제하에서 해약 및 계약자대출은 정지되었고, 보험금이나 연금 분야 업무는 계속하는 것으로 하였음.

21) 이 부과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되어 있음.

- 재건계획은 '93. 4월부터 7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음.
  - 단체보험, 건강보험 및 연금 부분의 영업라인은 타보험사로 매각되었지만, 나머지의 개인보험 및 연금 분야의 경우는 매수측을 확보하지 못했음.
  - 이에 따라 MBL의 나머지 영업부문을 인수할 준비회사로서 MBL 100% 출자 자회사로 MBLLAC (MBL Life Assurance Corporation)가 설립되었고, 동사로 개인보험 및 연금부문이 포괄이전되어 관리가 이루어짐.<sup>22)</sup>
- 한편 보험보증기금의 대상(일반계정) 제의 상품인 투자보증부계약 (GIC)은 MBLLAC의 준비금 부족 등에 대해서는 Prudential사를 중심으로한 대형 14사로 구성된 IAG (Industry Advisory Group)가 재보험의 형태로 구제되었음.<sup>23)</sup>
- 계약자 처우에 있어서 ELIC과 같이 재건계획 참가자와 부참가자에 대한 보증규모가 차이가 있음.
  - 재건계획 참가자는 전체의 93.8%였으며, 보험금이나 연금의 지불이 100% 전액 보증됨. 한편 각 계약자의 책임준비금 등에 대하여 최저 연 3.5%의 예정이율을 보증하고, 재건기간중에 해약이나 계약자대출이 없는 계약은 최저 연 5%을 보증하는 것으로 하였음.
  - 계약자대출은 파산후 보험료지불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해약은 ELIC와 마찬가지로 해약환급금이 체감식으로 삭감됨.  
(※<표 11>의 해약환급금 공제율 참조)
  - 한편, 재건계획 미참가자는 전체의 6.2% 정도였으며 GIC, 개인보험 및 개인연금은 책임준비금의 약 55%수준만이 보장되었음.

22) 여기까지는 향후 pp.30에서 언급할 일본의 일산생명의 파산처리와 유사함.

23) GIC에 관해서 원조하는 이유는 이들 대형생보사도 GIC를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보회사가 파산하더라도 GIC은 보증된다는 신뢰감을 GIC의 계약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음.

<표 13> 해약환급금 공제율 (MBL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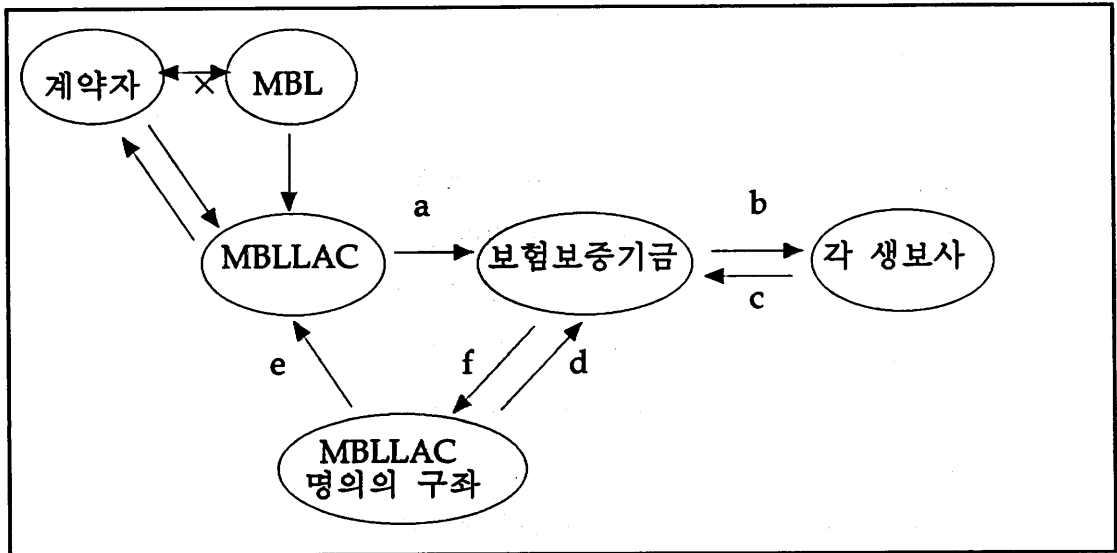
| 년 도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구분A | 32.6 | 27.1 | 21.7 | 16.3 | 10.9 | 5.4  |
| 구분B | 42.9 | 35.7 | 28.6 | 21.4 | 14.3 | 7.1  |

(주) 대부분의 경우 모든 주가 구분A에 포함되지만, Colorado주, Louisiana주, Colombia특별구는 구분B에 포함됨.

-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급부의 경우, 보험보증기금은 사망보험금액 100%가 보증되도록 MBLLAC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음.
- ① 재건기간중의 7년간, MBLLAC은 매년 계약자에게 지불한 보험금에 관해 보험보증기금에 보고 (\*<그림 2> a)
- ② 동보고에 의거 각 주의 보험보증기금은 주내의 각 생보회사에서 부과금을 징수 (\*<그림 2> b 및 c). (\*이상까지는 ELIC 동일)
- ③ 보험보증기금에 의해 부과금의 일부가 MBLLAC 명의의 계좌<sup>24)</sup>로 적립(\*<그림 2> d). 단, 보험금지급이 부족시 MBLLAC에 의해 MBLLAC 명의의 계좌로부터 적립금 일부가 인출(\*<그림 2> e).
- ④ 향후 7년뒤, 지가 상승 등에 의해 손실이 해소되어, MBLLAC의 잉여금이 일정액까지 회복한 경우, 이 계좌의 잔액은 각 보험보증기금을 통하여 생보회사에 반환 (\*<그림 2> f 및 b).
- ⑤ 다만, 재건종료시점에서 부채에 대한 자산 결손이 메워지지 않을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결손액을 책임(\*<그림 2> c 및 d).

24) MBLLAC 명의의 계좌가 설치된 것은, 장래에 부동산시장의 회복 등에 의해서 자산의 결손부분이 해소된다고 예상하였 때문임. 이와 같이 파산원인과 관련있는 처리책이 임기응변적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MBL의 사례는 특정한 파산처리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 보험보증기금의 급부방법 (MBL의 경우)



o 이상 미국 ELIC 및 MBL의 도산사례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음.

<표 14> 미국에서의 대표적인 도산사례 비교 (ELIC과 MBL)

| 구 분        | Executive Life Co.                                                                    | Mutual Benefit Life                                                                                      |
|------------|---------------------------------------------------------------------------------------|----------------------------------------------------------------------------------------------------------|
| 회사개요       | · 총자산 105억\$ (미국 전체 33위)                                                              | · 총자산 135억\$ (미국 전체 21위)                                                                                 |
| 관리체제<br>시점 | · 1991년 4월                                                                            | · 1991년 7월                                                                                               |
| 파산의<br>원인  | · 일불거치연금등 고이율상품 판매<br>· junk bond에 자산운용                                               | · GIC 등 고이율 상품의 판매<br>· 부동산과 모기지에 의한 자산운용                                                                |
| 재건계획<br>핵심 | · 불량자산의 부분 매각<br>· 보험계약은 France자본의<br>보험회사로 포괄이전                                      | · 개인보험 및 연금보험은 MBL의<br>자회사인 MBLLAC로 포괄이전<br>· GIC 관련은 IAG가 원조                                            |
| 계약자<br>처우  | · 재건계획참가자 (92%)의<br>사망보험금은 전액 보장<br>· 계약자대출은, 해약환급금 50%<br>한도 제한<br>· 해약환급금은 채감식으로 삭감 | · 재건계획참가자 (93.2%)의<br>사망보험금이나 연금의 지급은<br>전액 보장<br>· 계약자대출은 파산이후의 보험료<br>지불의 부분으로 가능<br>· 해약환급금은 채감식으로 삭감 |

## 2) 日本 日産生命<sup>25)</sup>의 倒産과 整理

### □ 日産生命의 倒産原因 및 經緯

- '80년대 후반 타금융권과의 경쟁심화로 개인연금보험(예: 일시납양로 보험) 등 고이율상품 (5.5%)을 대량 판매한 반면, 이후 금융당국의 저금리정책이 시행되면서, 큰 폭의 역마진에 처했음.
- 미국의 생보업계에서 처럼 日産生命은 역마진에 대한 대책으로서, 외환 등 파생상품 및 주식에 과다한 투자를 하였고, Bubble 경제의 후유증이 심화되면서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초과를 안게 되었음.
- 또한 '96년 日産生命의 경영위기가 인지되면서 단체연금계약을 시작으로 해약이 증가하여 자금유출이 본격화되었음.
- '97. 4. 25일 日産生命은 대차대조표상으로 525억엔의 적자를 내고, 결국 1,853억엔 (향후 3,029억엔으로 판명)의 채무초과로, 임시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의하였음.<sup>26)</sup>
- 사업중단을 대장성에 보고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보호기금 발동을 요청하였음. 당일 대장성은 보험업법 제241조에 근거하여, 日産生命의 보험계약의 체결, 해약 및 계약자대출 등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생명보험협회를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하였음.
- 대장성은 日産生命에 대해 강제관리명령을 발동했지만, 만기보험금, 연금, 사망보험금, 입원급부금의 업무는 지속토록 하였음.

---

25) 일산생명(日産生命)은 일본 대기업인 닛산그룹의 계열사로서 총자산이 약 2조609억엔의 중견 생보사 (상위 16위) 이었음.

26) 일본 생보산업은 2차대전 패전(1945년)이전까지는 해산명령 (2건) 및 합병 (10건), 포괄이전(16건)을 통해 퇴출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패전이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단지 3개 생보사만이 지역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계약포괄이전 형태로 정리된 바 있음.

## □ 日本의 不實 保險會社의 整理

- 재무적 부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험사업 영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자보호차원에서 대장대신(대장성 장관)이 업무의 정지, 보험계약의 이전 및 합병의 협의 명령, 재산의 관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신보험업법 제241조)
- 또한 강제관리 이외에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위탁관리 제도가 있으며, 이 방법은 장래의 경영재건의 준비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경영자의 자유의사로 회사업무 및 재산관리를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임.<sup>27)</sup>
- 한편 대장대신은 피관리회사의 보험계약 존속이 필요할 경우, 보험관리인에게 보험계약의 이전, 합병, 기타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은 자주적인 결정(※신보험업법 제135조~141조) 및 감독당국의 강제적 이전(※동법 제241조)에 의해서 이루어짐.
- 합병의 경우 대장대신의 인가시 추진(※동법 제159조 및 167조).
- 한편 계약조건의 변경은 계약이전 및 합병시에 가능하며, 보험금액의 삭감 및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이 이루어짐 (※동법 제254조).
- 보험계약이전의 원활화를 통한 보험계약자보호 및 보험산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함 (※동법 제259~260조).

## □ 日産生命의 倒産 處理

- 일산생명의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음.
-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계약자보호기금의 출자에 의해 가교보험사인

<sup>27)</sup> 동방법은 상법 제245조(영업양도·양수)의 규정에 대한 특례로 정해진 것임.

#### 아오바생명보험주식회사를 설립

- 즉, 동년 6월 생보협회는 日産生命의 보험계약을 생명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아오바생명으로 포괄이전을 발표하였음.
- 단, 기존 계약조건의 변경은 보험금삭감, 예정이율의 변경, 해약환급금의 삭감등 계약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형태로 하였음.
- 아오바생명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보호기금의 자금으로 하되 생보협회가 각 생보사에 할당부과
- 단, 생보업계는 아오바생명의 경영책임만 지며,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음
- 일산생명의 총 3,000억엔의 채무초과중 2,000억엔 (※출자금 10억엔 포함)은 계약자보호기금으로 원조하며, 나머지 1,000억엔은 營業權으로 상계하여 아오바생명이 향후 5년간의 수익으로 상각하기로 함.

#### □ 倒産處理에 있어서의 保險契約者 處遇

- o 일산생명의 기존 보험계약자들의 계약조건들을 대폭 변경하였음.
  - 즉, 기존계약들의 예정이율의 인하 뿐만아니라, 계약자에게 해약의 incentive를 줄이는 등 높은 해약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해약사태를 줄이려고 하였음.
  - 이러한 계획은 아오바생명 입장에서 매년 10%의 해약을 예상하여 수지계획이 세워진 것임.<sup>28)</sup>
  - 7년간 해약환급금을 체감식으로 삭감 (※조기해약공제제도 도입).
  - 예정이율을 2.75%로 하향조정과 함께, 종신연금과 양로보험 등의 지급액 및 만기보험금의 감액 조정 (※<표 15>, <표 16> 참조).

28) “日經 business” ‘97.10.27일 호에 의하면, 실제 영업개시로부터 매일 1,800건 이상이 해약됐으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간10% 이상의 해약이 되는 것임.

<표 15> 해약환급 공제율 (조기해약공제제도)

| 년 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공제율 | 15%  | 13%  | 11%  | 9%   | 7%   | 5%   | 3%   |

<표 16> 계약유지시 보험금액 및 연금액의 변화(남자 40세, 연납)

| 구분 / 계약시기           | 1988 | 1990 | 1992 | 1994 | 1996 |
|---------------------|------|------|------|------|------|
| 전기보험 10년만기          | ◎    | ◎    | ◎    | ◎    | ◎    |
| 의료보험 10년만기          | ◎    | ◎    | ◎    | ▲1%  | ◎    |
| 정기부종신 10배형 60세납     | ▲9%  | ▲13% | ▲12% | ▲3%  | ◎    |
| 양로보험 20년만기          | ▲21% | ▲20% | ▲21% | ▲9%  | ◎    |
| 정기부종신 60세납 65세 연금개시 | ▲43% | ▲44% | ▲45% | ▲21% | ◎    |

(주) 의료보험에는 수술특약포함. ◎ 변함없음, ▲ 감액

#### □ 契約者保護基金에 의한 資金 支援

- 아오바생명에 지불되는 2,000억엔은 각 회사의 책임준비금 규모와 연간 수입보험료에 근거하고 결정되었음.<sup>29)</sup>
- <표 17>에서 처럼 각사의 부담금은 적은 것이 아니며, 자사의 계약자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임.

<표 17> 보험계약자보호기금에의 각사의 부담 (상위 8개사)

| 회사           | 일본   | 제일   | 주우   | 명치  | 조일  | 삼정  | 안진  | 천미진 | 합 계   |
|--------------|------|------|------|-----|-----|-----|-----|-----|-------|
| 부담금액<br>(억엔) | 401  | 274  | 236  | 174 | 126 | 110 | 100 | 66  | 1,490 |
| 부담비율<br>(%)  | 20.2 | 13.7 | 11.8 | 8.7 | 6.3 | 5.5 | 5.0 | 3.3 | 74.5  |

(자료) <http://www.mmjp.or.jp/KANSAIHOKEN/nisan-syori.html>

29) 각 사의 부담금은 손금산입으로서 취급되어짐.

## □ 日産生命 倒産에 의한 影響과 問題點

- 일산생명 이외 다른 생보사의 해약 및 계약자대출이 급증하였음.
  - '97. 5월 이후 내국사 (44개)의 보유계약고(전월말비)가 감소.
- 일산생명 파산이후 생보사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반면, 생보사 경영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생보사 경영에 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이상, 보험회사의 건전도를 알기 위해 업계내에서의 보험사 순위(ranking)에 대한 관심 고조.
  - 특히 생보사에 공적연금자금 운용을 위탁하고 있는 연금복지사업단은 생보사 안전성 지표의 하나로서 순위 취득을 요청하였음.
  - 대부분의 생보회사는 시장에서의 신용도를 가리키는 순위 상향화 작업을 위해서, 보험금의 지불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자본의 확충 진행시켰음.
  - 그러나 지급여력 (solvency margin)의 개선을 위한 위험자산 (예: 주식) 매각은 다시 증시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결국, 투자수입 및 경영 기반체력 등 장래의 이익창출원을 상실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

## □ 日産生命의 倒産으로 浮刻된 日本 生保業界의 問題點

- 보험계약자에의 생보사 경영정보 제공이 불충분하였다는 점.
  - 파산이전 약 3~4년전부터 사실상의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인 B/S상의 흑자결산 및 배당 허용 등 정확한 정보제공 차단.
  - 투자자산의 내재 손익에 관한 시가평가의 정보가 시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투자에 한정되어, 즉 시장성이 없는 사모투신의 운용 실태는 포함되지 않는 등 현행 제도상의 보완 필요.
  - 따라서 생보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부의거래(off balance)를 포함시킨 경영내용의 공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

○ 계약자보호기금 2,000억엔 설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 계약자보호기금의 상한수준을 2,000억엔으로 한 것은 중형생보사 파산시, 예상 채무초과규모를 중형사 자산의 약 10%로 예상하여 설정한 것이었음. (※중형사 자산규모 : 약 2조~5조엔)
- 그러나 일산생명의 채무초과액이 약 3,000억엔 달한다는 점에서 2,000억엔의 상한수준은 다소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되었음.

○ 부족분 1,000억엔의 계약자보호기금 추가 미증액에 대한 사항

- 생보사의 자산 및 수익은 계약자의 몫이기 때문에 동기금의 증액은 일산생명이외 각 생보사의 계약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임
- 생보사가 파산회사의 계약자구제를 위해 끝없이 부담금을 각출하면 계약자대표소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도산사유의 책임에 대한 조치가 없이 파산회사의 계약자를 전면적으로 구제하면, 생명보험회사 경영자의 moral hazard 초래 가능.

○ 파산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

- 당시 일산생명 경영진 및 간부에 대한 경영책임을 묻는 계약자대표소송의 움직임 일고 있다는 점. 특히, 고위험자산에의 무리한 투자와 이로 인한 역마진발생의 경영책임을 중요시되고 있음.
- '95. 9월에 일산생명에 대한 대장성 감사때 이미 약 1,300억엔 수준의 채무초과상태에 처한 사실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표하지 않고서 보험계약인수를 지속하였음.

○ 보험산업 감독청으로서의 대장성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 대장성은 일산생명의 경영상황을 통해 이미 채무초과에 빠지고 있는 것이 판명된 단계에서 정확한 감독지도의 불이행.
- 일산생명이 판매한 고이율보험상품의 판매를 계속 허용한 것 이외에 ,

‘95년에 채무초과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결산실적을 인정하였음.

- 계약자보호기금 제도를 도입한 신보험업법이 적용된 ‘96. 4월, 대장성이 일산생명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면, 일산생명의 기존 계약자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sup>30)</sup>

#### □ 日産生命(→아오바생명)의 賣却處理 및 賣却失敗의 問題

- o ‘97.4월 파산한 일산생명의 기계약 유지관리회사인 아오바생명의 주주인 일본 생명보험협회가 국제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해 왔으나 실패로 끝났음.

#### o 매각교섭 추진과정의 주요 내용 :

- ‘98. 4월에 미국 AIG가 아오바생명 매수의사를 표명해 음에 따라, 일본 생명보험협회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국의 모건스탠리사를 간사로 지명하여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폭 넓은 인수희망 회사와 매각교섭을 추진하였음.
- 경쟁입찰에 참여한 10여개사중 프랑스의 「아르테미스」 회사가 매수 가격 400억~500억엔 정도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
- 買收提示價格 : 총자산대비 3.2~3.9% (‘98.9말 총자산 1조2558億円)  
(※아르테미스사 : 프랑스의 대형유통그룹인 프랭탕그룹의 총괄지주 회사임. 아르테미스는 그룹내 보험회사가 없음)
- 이에 따라 당초의 미국 AIG는 아오바생명의 매수를 포기함

#### o 일산생명 (아오바生命) 賣却의 失敗 :

- 아오바생명의 주주인 일본생보험회는 ‘99년 1월중 프랑스의 아르테미스와 매각가격에 대한 최종교섭을 단행했지만, 희망매도가격과의

---

30) 일산생명의 채무초과액은 ‘96. 3월말에 1,314억엔이고, 동기금의 한도액 2,000억엔의 범위내이었음.

불일치로 최종매각에 실패함.

- 따라서, 생보협회는 아오바생명을 청산존속회사로서 보유·유지하면서 향후 새로운 적정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일산생명 (아오바生命)의 主要 指標 ('98.9말기준) :

- 총자산 : 1,255,831백만엔,
- 보유계약 : 개인보험 (27,105백만엔), 개인연금보험 (7,301백만엔)  
단체보험 (243백만엔), 단체연금보험 (3,023백만엔)
- 주요수지 : 보험료등 수입(32,267백만엔), 자산운용수익(16,211백만엔)
- 보험금등 지급금 (208,571백만엔), 자산운용 비용(3,957백만엔)
- 총수지차 : ▲1,640억엔

□ 日産生命 賣却失敗의 原因

- 일본은 생보사의 경영파탄시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의 생명보험파트에 해당)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公的資金의 투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단,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허용되어 있음)

- 아오바생명의 계약은 계약이전시 이미 예정이율이 인하조정되었고, 또한 이미 해약할 만한 계약들은 거의 해약된 상태이므로 잔존계약은 거의 우량계약인 상태임.
- 그러나 아오바생명 인수의 외국 희망자와 공적자금 지원이 없는 대신 낮은 인수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인수가격의 절충이 되지 않은 것임.
- 따라서, 아오바생명의 매각 실패는 생보사의 매각에 공적자금의 투입 의사가 없다는 일본정부의 안이한 정책태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표 18> 아오바생명보험회사의 組織과 概要

### ■ 會社概要

- ◇ 사명 : 아오바생명보험주식회사
- ◇ 면허취득일 : 1997년 7월 7일
  - \* 보험업법 제139조에 의거 대장대신 인가취득
- ◇ 영업개시일 : 1997년 10월 1일
- ◇ 자본금 : 10억엔
- ◇ 주주 :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
- ◇ 대표자 : 사장 山口 尚

### ■ 會社組織

- ◇ 본사기구 : 6개부서
  - 총무부, 주계부, 재무부, 개인보험부, 기업보험부, 정보시스템부
  - \* 보험금, 해약환급금등 지급과 계약보전업무는 일체 본사에서 직접수행.
- ◇ 지사기구 : 7개지사
  - 삿쵸로지사, 센다이지사, 히다찌지사, 나고야지사, 오오사카지사, 히로시마지사, 후쿠오카지사
  - \* 지사는 별도로 보험금지급등 보전업무는 수행치 않고 계약자로부터의 질문이나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만 대응.
  - \*\* 영업소는 없음

### ■ 會社人員

- ◇ 98.3말
  - 총 391명
    - 임원 : 사장1, 이사 3, 감사 1
    - 직원 : 386명 (남 : 204, 여 : 182명)
    - \* 391명중 약 1/4은 생보업계 타보험사에서 파견.
- ◇ 98.7.9 현재
  - 본사 : 300명(지사는 98.9이전에 80명이었으나 전부 폐쇄됨)

### ■ 經營方針

- ◇ 日産生命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고의 방침이고, 보험금지급능력의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계약자의 신뢰에 부응하는 열린 경영을 해 나감

### 3) 日本 東邦生命의 業務停止命令 및 倒産危機

#### □ '99. 6. 4일자로 東邦生命의 倒産

- 동방생명은 지난 '98.4.1일자로 GE-Capital사에 금융재보험으로 계약을 이전하고, 남은 잔존계약의 유지관리회사로 존속해 왔었음.
- 약 2,000억엔의 채무초과 상태가 되어, '99년 6월 4일자로 금융감독청에 사업중단을 신청하였음.
- 이에따라 금융감독청은 동방생명에 대해서 업무의 一部停止命令(계약접수 및 배당금 지급업무의 정지)을 발동함. 다만,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료 징수업무는 계속함

(※동방생명 <98.9월말> 총자산: 2조8046억엔, 보험계약자: 약 157만명)

#### □ 東邦生命의 事業中斷 決意 背景

- 동방생명은, '99.5.6일 이사회가 승인한 결산에 대하여 외부감사법인인 토마스(외자계 회계감사법인)가 「不適法」 판정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중단을 결의함.

#### ○ 監査法人 토마스의 결산감사 지적내용 :

- 유가증권의 미실현손실 상각분 1,200억엔, 대손상각·충당금 등 960억엔 등 총 2,300억엔의 추가처리를 요청.
  - 동충당금 등의 처리시 2,000억엔의 채무초과를 면할 수 없어 사업을 중단하게 됨.
- 동방생명의 채무초과는 자산의 상각·충당금에 대한 감사기준이 전년도에 비해 강화되어 강화된 기준에 의거 처리되었기 때문임.
- 부적법 판정은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되며, 감사법인의 부적법판정은 동방생명이 粉飾決算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임

## □ 東邦生命의 倒産 原因

- 동방생명은 GE-Capital Edison(주)에 계약을 금융재보험 방식에 의거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 700억엔의 영업권을 수취하고, 향후 10년간에 걸쳐 에디슨사와의 공동재보험 방식으로 약 900억엔의 수익을 얻을 계획이었음. (※부록의 <자료 1> 참조)
- 그러나, 이러한 「동방 - GE-Capital」 방식에 의한 경영재구축 및 구조조정이 실패로 끝난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동방생명은 80년대 후반 버블경제의 전성기 시대에 예정이율 6%대의 저축성보험상품(일시납양로보험)을 대량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 기계약의 유지·관리회사라 하더라도 매년 500~600억엔 (약2%정도의 역마진) 정도의 역마진이 발생하였음  
(※ '96, '97, '98년 : 매년 500~600억엔 역마진 발생)

## □ 金融再保險 方式의 問題點

- 금융재보험은 이론상으로는 기계약중 일부를 자산/부채 모두 일괄적으로 금융재보험하여 리스크를 전가하고, 대신에 재보험출재수입을 얻어 자본증액을 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동방생명의 경우 기계약의 평균예정이율이 높아 매년 발생하는 역마진과 유가증권 등의 대손상각금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상황하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98년 4월 동방생명의 금융재보험에 의한 구조조정 처리시에도 약 1~2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 따라서 부실이 지나쳐 일시적 자금증강으로 개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인 M&A 등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생불가능한 보험사를 단지 기간만 연장시켜 오히려 부실규모만 증대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 東邦生命의 事後處理 豫想

- 금융감독청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동방생명의 保險管理人으로 생명보험협회장과 공인회계사 1인 및 변호사 1인을 선정하였음.
- '97년의 일산생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방생명의 계약자에게는 저축성보험인 양로보험의 만기보험금이나 개인연금보험의 연금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업법상 보험사 파산시 보험계약 기초율에 대한 조정 가능)
- 동방생명에 대해서는 인수회사가 나타나면 계약이전 또는 매각을 하고, 인수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生命保險契約者保護機構」가 인수할 전망이다.

□ 日本 生命保險協會長の 東邦生命의 倒産處理 根本對策 要求

- 현재 일본의 부실생보사의 문제는 Bubble시기에 판매한 저축성 양로보험의 높은 예정이율에 따른 역마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보협회장이 제기하였음.
- 현재는 보험업법상 파산후 예정이율의 인하조정이 가능하나, 이를 파산전에라도 인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임
-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파산전이라도 早期是正措置의 일환으로 지급여력이 현저하게 열악한 회사에게는 경영개선조치의 일환으로서 예정이율을 引下調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문제제기.
- 다만, 이 경우 계약자의 반발이 예상되며 또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우려됨.

□ 東邦生命의 豫想 引受會社

- o 동방생명의 금융재보험 계약시 GE-Capital의 자회사인 Edison생명은 동방생명의 손익에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GE-Capital의 인수책임은 없음.
- 다만, 동방생명이 GE-Capital의 실질적인 자회사라 할 수 있으므로 GE-Capital이 동방생명을 인수할 가능성은 있음
- 이 경우에도 일단은 동방생명의 채무초과액을 생명보험계약자보호 기구에서 보전조치를 취한후라야 인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일본내의 기존 생보사들은 GE-Capital이 기존사들의 부담으로 채무 초과액이 정리된 이후의 부담없는 인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순조롭게 동방생명을 GE-Capital이 인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o 또 다른 대안으로는 이미 일산생명을 인수한 가교보험사, 즉 아오바생명(생보협회가 주주)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음
- 즉, 아오바생명이 동방생명까지 인수하여 두회사의 정리·매각을 지속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 東邦生命 倒産에 따른 支給餘力制度의 問題點

- o 동방생명은 금번에 문제가 이사회에서 승인한 '98년도 결산안에서 지급여력제도상의 지급여력이 200%를 초과한 것으로 결산정리되었음
- 토마스의 감사후 채무초과분을 반영한 수정 지급여력비율은 157%.
- (※일본의 Solvency Margin의 정상 <재무건전성> 충족 : 200% 이상)
- 이사회에서 승인된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초과한 것은 '99년 3월 중에 외국계 은행으로부터 215억円の 후순위대출차입을 한 때문임
- 동방생명은 지급여력이 건전성기준을 충족하였지만 채무초과가 과도하여 파산하였으므로, 지급여력기준을 충족하였다하여 반드시 파

산치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된 것임.

- 따라서, 현재 공시되고 있는 경영지표 항목중 자산항목(시가기준) 뿐만 아니라 책임준비금액도 공표하여 계약자가 채무초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4) 不實生保社 整理의 美國과 日本 比較

##### □ 不實 生保社 處理에 있어서의 共通點

- 기존계약의 해약에 대해서 일산생명, ELIC, MBL 모두 해약환급금을 제감식에 공제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점임.<sup>31)</sup>
  - 해약에 대한 페널티 부과 이유는, 파산직후 일시에 해약급증을 방지함과 동시에, 페널티부분을 수익으로 기대했기 때문임.
  - 즉 조기해약공제제도의 도입은 ELIC이나 MBL의 재건계획에서 처럼 파산회사를 인수할 회사의 경영을 개선시키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예상되었다는 점임.
- 파산처리 결정 초기부터 장래의 예상에 의거 가능한한 부실사 인수회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선택하였음.
  - 실제로 조기해약공제제도를 포함한 파산처리 방안을 통하여, 일본의 아오바생명은 예정이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량자산이 없는 한 우량회사로 출범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외국계 보험회사가 일본의 아오바생명을 매수할 것이라고 예상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음.
  - 실제로 '98. 4월에 미국의 AIG그룹에서 매수에 관심을 표명했고, 미국의 ELIC나 MBL의 경우도 장래에 신규계약이 재개될 예정이고, 새

31) 일산생명의 파산처리책으로서 ELIC이나 MBL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기해약공제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이 시작하는 보험회사는 우량기업으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不實 生保社 處理에 있어서의 差異點

- 日産生命, ELIC, 및 MBL의 파산처리책에 있어서 계약자의 처우, 재산 처리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자와 일반채권자의 우선순위, 파산처리방안 또는 재건계획의 성립과정, 구제회사 혹은 인수회사의 결정, 각사 부담금의 취급, 소요재원의 조달방법 및 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험보충기금에의 가입의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음.

① 기존 보험계약자에 대한 처우

- 일본 : 생보협회의 파산처리 방안에 의해, 모든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인수회사로 포괄이전되었음.
- 미국 : 계약자가 재건계획에 참가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점에서 파산처리 절차에 탄력성이 있다고 평가됨.<sup>32)</sup>

② 재산처분상의 보험계약자와 일반채권자의 우선순위

- 일본 : 상호회사 청산의 경우 (※합병 또는 도산제외), 보험업법 제 181조에 의거,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保險契約者로서의 권리는 일반채권자와 同順位이나, 상호회사의 특성상 社員으로서의 권리는 일반채권자보다 後順位임<sup>33)</sup>.

(※ 계약자로서의 권리 :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할당배당금)

(※ 사원으로서의 권리 : 미할당배당금, 미처분잉여금)

---

32) 물론 재건계획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자는 대단히 불리한 처우를 받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가 재건계획에 참가하였음.

33) 구보험업법 제75조에서는 보험계약자보다도 일반채권자쪽이 우선권이 있었음.

- 미국 : 우선순위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일반채권자는 보험계약자보다 불리함.<sup>34)</sup>
- 일산생명의 보험계약이 아오바생명으로 포괄이전된 경우처럼, 포괄이전시에는 업법 제135조3항에서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지 않으면 안되게 정해져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보다도 일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취급됨.
- 따라서 계약자보호의 관점으로 보면, 계약의 포괄이전의 경우라도 재산처분의 순서에 관해서 최소한 보험계약자와 일반채권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③ 파산처리 방안 또는 재건계획의 성립과정

- 일본 : 대장성에서 보험관리인으로 선임한 생보협회에서 파산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감독기관인 대장성이 이를 인가하는 형태임.
- 미국 : 보험감독청, 전미 생명건강보험보증기구(NOLHGA), 각주의 보험보증기금이 함께 재건계획을 마련한 반면에, 최종결정은 제3자 입장인 법원의 인가 판결이 필요함. 또한 재건계획의 책정 과정에서, 외부의 법률가 또는 보험계리인 등, 제3자에 의한 재건계획의 검토 및 공청회를 통한 계약자 의견 수렴의 기회가 있음.

### ④ 파산보험회사의 구제회사 혹은 인수회사 결정 :

- 일본 : 일산생명 파산직후에 대장성에 의해 인수회사의 설립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생보협회가 파산처리안을 마련하였음.
- 미국 : 보험감독청이 파산회사의 처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즉, 보험청이 파산회사의 입찰 매각시 계약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를 구제회사로 선택할 수 있음.

34) 뉴욕주 보험법의 제7435조 "Distribution of Life Insurer"에서 정리대상 보험회사의 자산의 분배처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의 보험관리인은 미국만큼 파산회사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대장성 주도의 처리가 불가피함.

##### ⑤ 파산처리 소요자금의 각사 부담금에 대한 취급(예: 조세 적용)

- 일본 : 각 생보사의 부담금은 손금산입 (소득공제)으로 처리.
- 미국 : 보험보증기금이 징수하는 부담금은 세액공제 처리<sup>35)</sup>.
- 즉 양국에서는 파산회사에 대한 원조금, 즉 보험회사에게 분담되는 부담금에 대한 입장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각 보험회사의 부담액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음.<sup>36)</sup>

##### ⑥ 파산처리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일본 : 일산생명의 파산직후 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아오바생명으로 2,000억엔의 자금원조가 설립과 동시에 전액 보전됨.  
단, 각사 부담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10년간 분할비율로 납부됨.
- 미국 : ELIC 및 MBL의 경우 재건계획 기간을 통해서 보험보증기금이 분할 지급함.  
첫째, ELIC는 일산생명과 같이 파산직후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급부금액이 확정되었음. 그러나, 전체 계약자의 보험금지급은 일시에 이행되지 않고 분할급부가 가능하여 각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됨.  
둘째, MBL는 재건계획 자체가 장래의 지가상승시 보험보증기금에 의한 부담액 감소를 예상하여 책정한 점과, 또한 매년 보험보증기금

35) 뉴욕주의 경우 1년만에 지불한 부담금 규모가 1억\$를 넘으면 보험회사 영업세가 공제됨.

36) 보험회사가 동액의 부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일본보다도 미국쪽이 적음.

한편 보험심의회 제 67회에서 초저금리정책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이 압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경우 부담금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의견이 나온 바 있음.

으로 부터 불입된 MBLLAC 명의의 구좌로부터 MBLLAC가 보험금 부족분을 보전하게 하였음.

- 특히 MBL의 경우 구제회사의 부담 경감, 파산원인과 직접 연관된 구제방법 사용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재건기간중 구제회사(MBLLAC)가 부동산가격에 따른 위험과 함께 자금지원이 분할로 이루어져 결국 재건기간중 채무초과를 떠맡아야 하는 위험을 가짐.
- 결국 파산회사의 계약을 이전받은 아오바생명이 계약자보호기금으로부터 일시에 채무초과액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일산생명의 처리안이 ELIC 및 MBL의 재건계획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⑦ 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험보증기금에의 각사의 가입의무

- 일본 : 기존의 계약자보호기금에의 가입이 任意的임.  
(※'98.12월 신설된 "보험계약자보호기구"는 강제가입으로 변경)
- 미국 : 보험보증기금에의 가입은 强制的임.
- 파산회사의 계약자보호 측면에서 보면, 강제가입쪽이 바람직함.  
그러나 건전한 보험회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파산회사를 위한 소요재원을 반드시 분담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함.
- 특히 일본의 경우 '98.12월에 개정된 보험보증기금제도(「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경우는 강제가입으로 하여, 보험회사가 파산시 영국<sup>37)</sup>과 같이 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의 90%를 보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책임준비금의 90% 보증은 결국 파산회사의 규모에 의해서 각사의 지출 부담금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⑧ 계약자보호기금 또는 보험보증기금에의 각출금 상한액 여부

- 일본 : 일산생명 파산이후의 당시에 보험회사의 계약자보호기금의 가

37) 영국의 경우 각사의 부담금은 사후각출제 방식으로서, 수입보험료의 1% 이내에서 보험회사로부터 징수함.

입이 강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한이 없는 부담금이 징수되는 system에 강제 가입되는 형태로 유지된 바 있음.

- 미국 : 보험보증기금에의 가입이 강제적인 반면에, 각사의 부과금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음.

(※뉴욕주 : 생보사 파산에 따른 각 회사별 사후각출금은 수입보험료의 2%이내이며, 다만 각출금 총액한도가 5억\$로 설정)

#### < 參 考 1 > 보험보증기금 관련 세부사항

- ▶ 즉, 일본의 일산생명 파산 당시에는 회사별로 상한수준이 없는 부과금 (사후 각출금) 징수체제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 (헌법 제29조의 재산권에 저촉 여부)\* 등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었음.
- ▶ 그후 '98.12월부터는 새로이 도입된 보험보증기금 제도 (일본의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는 보험사로부터 각출할 수 있는 최고 적립액 상한규모가 4,000억엔으로 하였음. (※세부내용 <참고 2> 참조)
- ▶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에서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 규정 (사전각출제)하고 있음. 그리고 동 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적립액이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보험금지급 부족시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부실보험사 구제와 관련하여 별도로 다른 보험회사에 강제적으로 부담금을 사후에 각출한 경우는 없음.
- 다만, 최근에 보증보험회사의 정상화를 위하여, 합병사인 “서울보증보험사”에 일부 보험회사의 미수보험금의 일정비율(50%)을 출자방식으로 전환시킨 사례는 있음.

\* 보험심의회 제67회 총회에서 부담금과 관련, 연간 부담한도금액 또는 누적 부담한도액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회사의 파산시 다른 보험회사의 부담규모가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 강제적 제도가입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음.

< 參考 2 > 일본의 보험보증기금제도 개정내용

'98.12월 보험계약자보호기금 → 보험계약자보호기구로 변경

-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구가 1998. 12. 1일부로 시행되었음.
  - 보험계약자보호기구 (이하 「기구」) :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의 기구를 별도의 인가법인 (민법상의 공익법인) 으로 설치하였음.
  - 동제도는 과거와 달리 모든 보험회사의 강제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음.
- 기존의 保險契約者保護基金과의 관계 :
  - 보험계약자보호기금은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서 흡수함
- 새로운 보험계약자보호기구의 제도적 구조 :
  - 파산회사에 대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는 경우 :
    - 구제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포괄이전하고, 機構에서 자금원조.
  - 파산회사에 대한 구제보험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 機構에 보험계약을 포괄이전 (※보험계약 계속 유지관리)

<표 19> 일본의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보호기구

|                                   |                  | 2001년 3월말일 까지                                             | 2001년 4월 1일이후            |
|-----------------------------------|------------------|-----------------------------------------------------------|--------------------------|
| 대상<br>계약<br>및<br>보<br>상<br>내<br>용 | 개인연금보험<br>재형연금보험 | 100% 보상                                                   |                          |
|                                   | 개인보험<br>단체보험     | · 사망보험금, 100% 보상<br>· 임원금부금 " " " " " "<br>· 해약환급금 90% 보상 | 90% 보상                   |
|                                   | 단체연금보험           | · 90% 보상                                                  |                          |
|                                   |                  |                                                           |                          |
| 업<br>계<br>부<br>담                  | 연간 부담액           | 右記金額 (600억엔/년) + 600억엔의 특별부담금(경비)                         | 600억엔/년 (日産生命分 250억엔 포함) |
|                                   | 사전적립한도액          | 4,000억엔                                                   |                          |
|                                   | 機構의 借入限度額        | 右記金額(4000억엔) + 600억엔                                      | 4000억엔으로 예상              |

\* 연간부담액의 분담방법은 미확정.

### Ⅲ. 保險會社 構造調整의 合理的 方向

#### 1. 保險社 構造調整의 基本 方向 및 原則

##### 1) 保險會社의 支給能力 提高

##### □ 保險會社의 構造調整 基本 方向

⇒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근거한 조기시정 원칙 강화

- 현재 보험사 구조조정은 생보사중 시장개방후 신규진입한 부실 생보사와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대형 기존사가 주요 대상임.
- 향후 보험회사 감독의 핵심사항은 경영건전성 확보 및 이와 관련한 조기시정조치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 <표 20> 보험사 경영건전성 및 구조조정 추진 기준

##### ◆ 支給餘力 (Solvency Margin) 확보 여부 :

- 기존의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개선 및 강화 (※'99.5월 개정)
-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는 지급여력제도에 의한 판단

##### ◆ 經營健全性 (종합경영평가) 확보 여부 :

- 은행의 CAMEL방식과 유사한 경영실태평가제도의 도입 (예정)
-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생보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건전성 판단 및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부실경영에 대한 조기적발 및 시정으로 부실 파급영향의 최소화 유도

##### ◆ 리스크 綜合管理체제의 구축 여부 :

- 보험사 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체제의 조직 상실화 및 종합관리를 통한 경영관리의 안정성 유무

- 지금까지의 보험산업 구조조정은 금융산업 전체에 있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상실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
- 향후에는 단순한 부실사 정리 차원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적기에 정리되는 형태로 시정될 것임.
- 특히 보험산업의 경우 2000년부터는 완전한 가격자유화가 시행되고,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퇴출 제도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부실경영의 조기시정 및 부실화 책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음.
- 결국 보험산업을 포함하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시장의 구조적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향후 보험산업도 부실보험사의 선정 및 적극적인 퇴출을 통해 시장진입 및 퇴출시장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구축되는 자기책임 경영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임.

## 2) 外國事例에 의한 示唆點

### □ 最近 外國의 不實金融機關 早期整理 趨勢

-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부실금융기관을 조속 정리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책임하에 이를 방치시키는 정책이 유지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 早期整理 추세로 전환될 것임.
- 일본의 경우 중위권 회사인 日產生命이 '97. 4월에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이후, 가교보험사(架橋保險社→아오바생명)를 신규 설립하여 비록 해외매각에는 실패했으나 부실보험사를 조속히 정리하는 분위기임.

○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체질과 유사한 일본에서도 최근 중대형 은행, 증권, 생보사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과거와 달리 정부의 보호보다는 부실사의 조속 처리를 통해 금융시장내 파급효과를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sup>38)</sup>

- 즉, 이러한 시대적 전환은 보험사를 포함하여 불건전 금융기관의 무리한 영업행태의 악순환이 유동성위기와 지급불능사태를 야기하고, 또한 전염효과에 의해 전체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금융중개기능의 위협한다는 경험을 인식했기 때문임.
- 따라서 금융기관의 추가손실 및 금융중개기능의 급속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부족에 처한 금융기관은 영업정지, 폐쇄 등 조기 정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 □ 效率的인 構造調整 方式에 의한 政策效果 極大化

- 회생가능 (viable)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험사의 경우도 재무구조조정과 운영구조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즉 현재 각 보험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듯이 증자 및 후순위차입, 조직슬림화 등에 의한 재무구조조정의 추진중이지만, 동시에 경영합리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및 감사기능강화 등 운영구조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부실 보험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강력한 이행 촉구, 미이행시의 적극적인 예방적 제재조치가 필요함.

38) 특히 '92년 이후 금융산업 개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92~'97년까지 은행 9, 증권 4, 보험 1, 신용금고 4, 신용조합 46 등 총 64개가 파산된 바 있음. 이중 '97.4월의 중형사인 일산생명에 대한 전격적인 파산처리의에도 '97.11월 북해도지방은행 및 山日증권 강제정리 및 청산이 이루어진 바 있음.

□ 構造調整 推進 方式의 選擇

- 구조조정 처리방식, 즉 ① 단순 청산(liquidation), ② 가교금융기관에 의한 청산(bridge company), ③ 제3자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적 국유화(nationalization), ④ 인수 및 합병(M&A), ⑤ 자산 및 부채이전(P&A) 중 해당 금융업종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함.
-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퇴출방식을 비교할 때, 이 중에서 실제로 보험회사의 정리와 상대적으로 관련이 높은 방식은 2~3가지 정도임.

<표 21>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형태

| 구 분                 | 주 요 사 항                                            | 비 고                             |
|---------------------|----------------------------------------------------|---------------------------------|
| 자산·부채의 취득 및 승계(P&A) | - 피인수기관의 일부분만 인수, 추가 부실발생이 높을 경우 선호                | ※상호연계성 높음<br>(특히, 은행권의 구조조정 타당) |
| 자산의 분리(우량vs.부실 자산)  | - 피인수기관의 자산중 우량자산은 우량기관에게 넘기고 부실자산은 부실기관으로 이관하는 형태 |                                 |
| 인수합병(M&A)           | - 부실기관의 직접적인 인수&합병                                 | ※보험사의 구조조정 및 부실사 정리와 연관성이 높음    |
| 계약이전 및 청산*          | - 일정수준의 부보범위내에서 보호조치이후 자산 및 부채를 정리                 |                                 |
| 지분매각 및 제휴           | - 기존 지분의 부분 매각 및 신규자본 유입에 의한 자본제휴                  |                                 |

(주) \* 계약이전 및 청산에는 가교보험사에 의한 계약이전 및 청산이 포함됨.

## 2. 保險産業 構造調整 관련 制度的 補完裝置

### 1) 監督措置의 未備點 再發防止 및 補完

□ 生保社의 支給餘力制度 定着의 失敗 豫防

- 우리나라 특히 생명보험산업은 타금융권과는 달리 '94년부터 계약자보

호 및 생보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제도가 도입되는 등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장치가 존재하였음. (※<표 22> 참조)<sup>39)</sup>

- 그러나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보다는 운용상의 미비점으로 부실화방지 제도로서의 역할, 즉 보험사의 Solvency Margin 확보 및 早期是正措置 (Prompt Corrective Action) 제도로의 정착에는 다소 미흡하였음.

#### □ 生保社 支給餘力制度의 積極的인 施行 適用

- 타금융업종보다도 사전적인 부실화 방지 장치가 제도적으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 생보사가 양산된 이유는 초기의 부실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조기에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적기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임.
  - 즉, 시장개방이후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적정규모 이상으로 다수 회사가 진입<sup>40)</sup>된 상황에서, 사업초기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명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신설사의 초기 과도한 누적손실에 대한 적기의 시정조치가 부족하였음.

39)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지급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지급여력확보 제도)의 변천은 다음과 같음.

- 1991. 4월 : “생보사의 담보력 확보기준” 제정
- 1994. 6월 : “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제정
- 1996. 2월 : “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개정
- 1998. 4월 : “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개정, “손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제정
- 1999. 3월 : “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및 “손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기준” 개정
- 1999. 5월 : “생보사의 지급여력 확보에 관한 기준” 개정
- 1999. 6월 : “손보사의 지급여력 확보에 관한 기준” 개정

40) 국내 보험시장의 시장규모 예측과 관련하여 소위 최소효율규모(MES)에 근거한 적정 생보사 수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22> 지급여력제도 변천 추이 (생명보험)

| 년도      | (최저) 지급여력 기준                                                                                                                 | 지급여력인정 항목                                                                                                                                                                                                                     | 제재조치 단계 및 내용                                                                                                                                                            |
|---------|------------------------------------------------------------------------------------------------------------------------------|-------------------------------------------------------------------------------------------------------------------------------------------------------------------------------------------------------------------------------|-------------------------------------------------------------------------------------------------------------------------------------------------------------------------|
| 1994. 6 | 100억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및 잉여금</li> <li>○ 책임준비금 적립 초과액</li> <li>○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li> <li>○ 보험업법 97조 준비금</li> <li>○ 대손충당금</li> <li>○ 사업비 절감액</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제재조치</li> <li>○ 100억미만</li> <li>○ 100~600억미만</li> <li>○ 600억원 초과</li> </ul>                                                |
| 1996. 2 |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1%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항목에 신규 추가</li> <li>○ 금융형상품 절감액 (수입보험료 기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단계 제재조치</li> <li>○ 100억원 미만</li> <li>○ 100~300억원</li> <li>○ 300~500억원</li> <li>○ 500~1,000억원</li> <li>○ 1,000억원 초과</li> </ul> |
| 1998. 4 | 지급여력비율 > 0%<br>○ 지급여력비율 = $\frac{\sum \text{지급여력금액}}{\text{해약식책임준비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항목중 다음항목삭제</li> <li>○ 사업비 절감액</li> <li>○ 금융형상품 절감액</li> <li>- 상기항목에 신규 추가</li> <li>○ 후순위차입 (자본금이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제재조치</li> <li>○ 0% ~ -10%</li> <li>○ -10% ~ -20%</li> <li>○ -20% 초과</li> </ul>                                             |
| 1999. 3 | 지급여력비율 > 0%<br>○ 상기방식과 동일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항목중</li> <li>○ 신계약비 제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제재조치</li> <li>○ 0% ~ -10%</li> <li>○ -10% ~ -20%</li> <li>○ -20% 초과</li> </ul>                                             |
| 1999. 5 | 지급여력비율 > 100%<br>$\frac{\sum \text{지급여력금액}}{\text{지급여력기준}}$<br>○ 지급여력기준 :<br>(책임준비금 x 위험계수 x 소정비율) + (위험보험금 x 보험위험계수 x 소정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산항목 - 차감항목)</li> <li>○ 합산항목 : 납입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계약자이익배당금 및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순보식준비금중 미상각신계약비를 제외한 초과적립금, 정상 및 요구의로 분류된 자산의 대손충당금, 자본조정, 후순위차입</li> <li>○ 차감항목 : 신계약비, 무형자산중 영업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단계 제재조치</li> <li>○ 100% ~ 50%</li> <li>○ 50% ~ 0%</li> <li>○ 0% 미만</li> </ul>                                                 |

- 결과적으로 사업초기의 사업비 과다사용 및 이연자산화에 따른 실질적인 손실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기의 시정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자본금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과대손실 누적이 초래되었음.
- 특히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의 적용이 사실상 1년 6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면서, 사업초기에 허용된 초과사업비 이연상각제도가 악용되어 부실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임.  
(※ 기존사의 성장전략을 답습한 방만한 성장위주의 경영행태 지속)
- 또한 감독기관의 중자명령에도 불구하고 중자불이행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사실상 지급여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회사의 부실규모가 확대되는 악순환이 계속됨.
- 따라서 제도 자체의 보완 및 개선보다, 부실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구조조정 정책에 있어서 반드시 유사한 문제의 발생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2) 未來指向的 構造調整을 위한 制度的 補完點

### □ 支給餘力制度이외 綜合經營評價制度 導入

- 금번 '99.5월에 개정된 생보사 지급여력제도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국제적 정합성 측면이 보완됨으로써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이 진행중인 14개사가 2000.9월말까지 1년간 적용 유예되었고, 또한 국내 대다수 생보사의 지급여력이 취약하여 자기부담 위험계수에 소정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고 할 수 없음.

- 그러나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도입에 따른 국내 생보사의 경영건전성 유도 차원에서 국내 현실을 반영해야 하므로, 어느정도 한계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수용해야 함.

○ 기존의 보험사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 바, 과거 제도상의 문제점이었던 평가항목 및 지표선정, 가중치 부여, 특히 공공성에 대한 고배점 부여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음.

- 현행 검토중인 경영실태평가제도(안)은 '96.10월 미국의 은행에서 채택한 경영평가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은행권에 도입된 CAMEL제도<sup>41)</sup>를 이용하여 새로이 마련한 것임.

- 현재 기존의 경영평가제도를 폐지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에서 마련중인 경영실태평가제도(안)은 전체 종합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세분화되었음.

○ 현행 보험감독규정에 건전경영지도와 관련하여 지급여력 부족시 감독당국의 제재조치는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에 있어서 지급여력 비율과 함께 종합평가등급이 활용될 예정임.

- 따라서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행정조치가 지급여력 및 자산건전성이 증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기존의 경영평가제도가 현재 검토중인 경영실태평가제도로 대체될 예정임.)

---

41) CAMEL은 금융기관 경영에 대한 주요 평가부문인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a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을 의미함.

**<표 23> 생보사 경영건전성 관련 경영개선 행정조치**

| 구 분      | 지급여력비율   | 종합평가등급                                            | 기타                                      |
|----------|----------|---------------------------------------------------|-----------------------------------------|
| - 경영개선권고 | 50%~100% | -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지급여력부문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거액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28조의 1,2항 해당시    |
| - 경영개선요구 | 0%~50%   | -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상                                   | - 거액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28조의 2의 1,2항 해당시 |
| - 경영개선명령 | 0% 미만    | -                                                 | -                                       |

□ 保險社 經營리스크管理 綜合體制 構築 必要

○ 금융 자유화 및 국제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각 금융기관의 감독법규상 은행 및 증권사의 경우 해당 감독법규에 리스크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및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음.<sup>42)</sup>

○ 따라서 외국처럼 보험사 경영과 관련하여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즉 예를 들어서 보험사 경영상의 리스크에 대한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각각, 언더라이팅리스크(Underwriting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신용리스크(Credit risk), 경영리스크(Managemen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등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회사 조직차원의 관리에 대한 평가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42) 단, 현재 리스크관리권고(안)을 마련하여, 시행방안 작성후에 도입될 예정임.

□ 現行 構造調整 關聯 法規의 持續的 改善

- 부실 보험사 정리와 관련한 법규중 상위의 법규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예금자보호법” 등이 있음.
  -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 정리는 관리의 위탁(제99조), 정리계획서의 제출(제105조2항), 계약의 이전(제117조)이 있음.<sup>43)</sup>
  - 그외 금감위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의해 정리의 권고(제106조), 관리의 명령(제107조), 업무등의 정지(제110조) 등이 있음.<sup>44)</sup>
- 동법안들의 일부 항목중 부실회사 정리 등 구조조정을 위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유기적인 법률적 체제가 재구축되어야 함.
  - 즉 일부 상위법의 경우에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일부 하위법규와의 체계성이 다소 모호함.
  - 또한 현재 보험회사 건전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는 단지 보험 감독규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상위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조항이 누락되어있음.
  - 한편 타금융권과 달리 보험회사 경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즉 리스크관리체제에 대한 법조항이 없음. 향후 구조조정이 단순한 감독규정의 기준이외에 경영상의 리스크에 대한 관리조항이 요구됨.
- 금융기관 정리방법으로서 법규상 자본감자(주식소각, 우선주전환 등), 보험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계약이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업무와 재산의 관리 위탁, M&A, 청산 등이 가능함.

43) 이외에도 해산사유(제114조)중 일부의 경우가 해당됨. 한편 계약의 이전(제117조)을 하고자 하는 보험사업자는 신계약이 금지됨(제119조)

44) 현행 보험업법상에서는 보험사의 회사정리 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106조 정리권고 (합병, 업무 및 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이전 등의 권고),  
제107조 정리명령 (사업정지, 업무 및 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이전 등의 명령)  
제110조 사업등의 정지(관리의 명령시, 보험사업자 및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 이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과 구조조정 관련 공적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부각되는 구조조정 방안은 지분매각을 통한 자본제휴 및 인수합병, 가교사에 의한 매각청산이 적합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보험산업의 특징을 충분히 감안하여 타금융기관의 정리방안과는 차별화하여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표 24> 부실보험사 처리방안 비교표

| 구 분                | 장 점                                                                                                                                                                                                              | 단 점                                                                                                                                   |
|--------------------|------------------------------------------------------------------------------------------------------------------------------------------------------------------------------------------------------------------|---------------------------------------------------------------------------------------------------------------------------------------|
| 자발적인<br>흡수합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사 정리에 따른 비용절감</li> <li>- 자발적인 합병에 따른 정부 부담 감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li> <li>- 임직원의 강한 반발 예상</li> </ul>                                             |
| 가교사로<br>계약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계약 유지로 보험계약자 보호가능</li> <li>- 감독당국의 직접적 감독 가능</li> <li>- 정리비용의 단계적 소요</li> <li>- 정부출자에 따른 신인도 제고</li> <li>- 급격한 해약의 방지</li> <li>- 향후 국제입찰에 따른 투자 금액 조기회수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산업 민영화 취지에 위배</li> <li>- 임직원의 반발 예상</li> <li>- 정리비용의 과다 소요 (단기적으로는 적은 비용 소요 가능)</li> </ul> |
| 기존사로<br>계약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계약 유지로 보험계약자 보호가능</li> <li>- 기존 생보사의 대형화 가능</li> <li>- 보험산업의 이미지 제고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비용의 막대한 소요</li> <li>- 임직원의 반발 예상</li> <li>- 기존사의 부실 가능성 상존</li> </ul>                      |
| 해외매각<br>또는<br>외자유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유치를 통한 보험산업의 활성화가능</li> <li>- 기존 대주주의 자금부담 완화</li> <li>-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신인도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투자자의 현실적 참여 장벽 존재</li> <li>-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부실사보다는 우량사 선택 여지 존재</li> </ul>                 |

○ 시장퇴출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먼저, 시장진입에 대한 포괄적인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실경영에 대해서 엄격히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선진국 수준의 기업간 인수합병(M&A)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업 분할 방식의 회사인수가 용이하도록, 신규영업과 관련한 보험종목별로 법정 납입자본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신규진입시 납입자본금(현행 300억원)을 보험종목별로 세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진 및 주주의 손해보상 등 철저한 책임경영체제가 요구됨.

#### □ 契約者 權益保護를 위한 豫備制度的 現實化

○ 현재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는 두가지로서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제도 (금융감독원 관리)와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보증기금을 들 수 있음.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경우 지난 '88년 입법화한 것으로, 설립당시 납입자본금의 30~50%(현재 납입자본금의 30/100)를 감독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보험보증기금의 경우도 지난 '88년 입법화 하여 보험사업자의 지급불능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출연대상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또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표준비율에 의거 사전 각출되고 있음.<sup>45)</sup>

○ 그러나 계약자보호예탁금 및 보험보증기금의 액수가 '98.12말기준으로

---

45) 지난 '98. 10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시 기존의 수입보험료 기준에서 책임준비금기준으로 변경되었음. 따라서 최종적인 예금보험료율의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간별로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양분하여 각출됨.

각각 2,033억원(생명보험: 2,003억, 손해보험: 29억원) 3,511억원 (생명보험: 2,764억원, 손해보험: 747억원) 정도로서, 사실상 보험회사 파산시 계약자보호를 위한 예비자금으로는 적립 규모가 너무 작음.

- 특히 현재 생명보험 일부 부실회사(대형1개사 제외)의 자산초과부채 부실 예상액 약 2조를 상회하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당수준이 부족한 상황임.

○ 보험계약자 보호예탁금의 경우 개선방향으로서 보호예탁금액의 현실화 또는 동기금의 해체후 보호기금과의 통합운영을 고려할 수 있음.

- 향후 신규진입시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의 세분화가 이루어진다면, 영업개시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자본금증액에 대해서도 일정비율의 금액을 보호예탁금으로 적립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음.
- 또는 법제화 당시 신설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회성으로 각출한 것이고 현재 보험보증기금이 실질적인 부호기금이라는 점에서, 동기금의 해체후 보험보증기금과의 통합운용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임.

○ 보험보증기금의 경우 출연대상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에 일정비율(출연비율)에 의거 사전 각출되고 있으나,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험료각출 기준에 있어서 타금융권과의 형평성 및 실질적인 계약자 권익보호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함

- 현재 일본의 경우 보험계약자보호기구에 의한 보험회사(생명보험)의 각출 총한도액이 4,000억엔이지만, 중견급 회사 2개가 파산하더라도 동자금이 전부 소진되므로 동기구의 기능마비를 우려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부실보험사의 자금지원을 위해 과도한 부담금 할당에 상당히 민감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일본에서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에 의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생보사 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

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험사 구조조정 자금의 부족한 보험보증기금을 사후적으로 추가 각출시키는 경우 영국, 미국, 일본등의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각출한도 (각출 적립금액의 한도 및 각사별 부담액)등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지키면서 은행의 공적자금 투입과 마찬가지로 형평성있게 처리하여야 할 것임.

#### □ 持株會社(Holding company)의 導入을 통한 構造調整 活性化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에서는 보험지주회사<sup>46)</sup> 제도가 보험사 진입 및 퇴출의 원활화에 일조를 하는 있음.
  - 일본은 '96년에 개정한 신보험업법을 '97년에 재차 개정하여 보험지주회사를 인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 인정한 지주회사는 보험사를 자회사로 하는 上位持株會社(upstream holding company)로서 보험지주회사가 생보사·손보사·증권회사 및 기타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이미 '96년 신보험업법에서 생보사가 손보사 및 도산 및 이에 準하는 生保社의 주식을 취득하여 子會社로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바 있음
  - 일본에서 생보사(또는 손보사)가 자회사방식으로 동종의 보험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보험사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음
  - 현재는 지주회사제도를 통하여 보험사가 도산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46)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설립되어 금융재생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함(※'97년 신보험업법 : 제271조의2 제1항). 그리고 금융재생위원회란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총괄적인 상위조직으로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위원회와 동일한 기구임.

동종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음

- 미국에서 보험사의 M&A가 활발하고 진입·퇴출이 자유로운 이유는 지주회사제도의 발달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갖는 上位持株會社(upstream holding company)뿐만아니라 下位持株會社(downstream holding company)도 인정되고 있어 구조조정의 원활화뿐만 아니라 금융업무의 다각화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保險會社設立許可基準 (재경부고시 '97.4)」에 따라 생보사 (→손보사)가 생보사 (→손보사)를 자회사로 취득할 수 없는 등 同種의 보험회사의 취득은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보험사의 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해서는 동종의 보험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른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을 통하여 생보사, 손보사, 은행, 증권사 등이 부실금융기관을 원활히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IV. 結 論

-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지난 '80년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 달성 이후, '90년대 들어서 순조롭게 安定成長期로 전환되는 듯하였으나,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FY'98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였음.
- 특히 金融産業 전반에 걸친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부실보험사의 시장퇴출이 이루어졌고, 현재 추가적인 퇴출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앞으로도 支給餘力比率의 달성도 여하에 따라서는 부실 보험회사의 退出이 불가피한 시장상황이 예상되어지고 있음.
- 향후 보험시장은 부실보험사의 整理 결과에 따라서 産業全體의 安定化와 직결되는 새로운 경영환경이 예상되므로, 부실사 퇴출시 계약자 보호 및 잔존 보험회사들에게 미치는 退出의 影響이 最小化되도록 퇴출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럽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통한 보험사의 인수·합병이나, 최근 일본에서 금융재보험 방식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재보험이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한편 퇴출방식 선정에 있어서 구조조정 소요비용이 가정 적게 들면서 합리적으로 회사를 賣却 또는 整理할 수 있는 방식이 선택되어야 함.
  - 따라서 외국과 같이 預金保險(保險保證基金)의 사용은 限定的으로 사용되어야 함. 예금보험의 과대한 사용을 통한 구조조정은 현존하는 보험사의 경영행태에 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으며,
  - 또한 산업내 잔존 보험회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시말해서, 보험산업내 다른 보험사들이 부실회사에 대해 연대책임 방식의 예금보험을 이용한 구조조정은 결국에는 계약자에게 부실의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외국과 같이 일정한 한도내에서 산업의 부실을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부실사의 계약자에게도 「契約의 自己責任原則」에 입각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부실의 일정책임은 국가의 사회적 책임아래 재정지출에 의한 분담도 있어야 할 것임
-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보험산업도 부실사에 대한 사후책임의 rule과 그 범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임.

o 여하간 향후 국내 보험산업의 成長 潛在力을 감안할 때, 국내 및 외국 자본의 新規流入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금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보험산업의 신규진입과 퇴출의 명확한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퇴출시의 rule을 보험사업자 및 가입자가 事前에 주지하고 있음으로써,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부실회사의 퇴출에 대해 국민의 컨센스하에 신속한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o 부실 보험회사의 국내외매각에 있어서 最小의 자금지원으로 最大의 新規資金流入을 이룸으로써, 현재의 구조조정과정이 진정한 보험산업 발전의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될 것임.

o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構造調整을 통하여 退出의 Best Practice를 선례로 남김으로써, 향후 보험시장내 진입·퇴출의 유연성 정착과 자기책임경영의 문화가 早期에 定着되기를 기대하는 바임.

## <資料 1>

### 東邦生命의 金融再保險을 利用한 構造調整

#### □ 東邦生命의 金融再保險을 이용한 構造調整 事例

##### 1) 東邦生命의 概要 및 最近 主要實績

##### □ 東邦生命保險會社の 沿革 및 經營 實績

- 1898년 : 「장병보험주식회사」로 설립
- 1925년 : 「제일장병보험주식회사」로 개칭
- 1945년 : 「신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로 개칭
- 1947년 : 금융기관재건정비법에 의거, 제2회사(포괄계약인수회사)로서 「동방생명보험상호회사」를 설립

<표 1> 1997년 주요 경영실적

| 구 분   |        | 1997.3월   | 1997.9월   |
|-------|--------|-----------|-----------|
| 보유계약고 | 개인보험   | 233,863억엔 | 220,920억엔 |
|       | 개인연금보험 | 27,873    | 25,731    |
|       | 단체보험   | 137,572   | 131,140   |
|       | 단체연금보험 | 2,015     | 11,028    |
| 총자산   |        | 45,095    | 42,148    |

## □ 中型級 生保 8개사의 經營實績 惡化

- '97.4월 일산생명의 파산직후에 전반적으로 해약이 급증하여 '97년도 상반기(4월~9월)에 해약율이 전기동기대비 약 87% 증가하였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중 외국계 등 다수의 소형생보사를 제외하고, 중대형급 생보사중 금번의 일산생명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생보사는 중형급 생보사임.
- 동방생명의 책임준비금중 부채구조는 연금보험(개인 및 단체)의 보유계약이 약 56%에 달하여, 일본의 저금리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차손실이 증가하여 회사의 안전성이 급격히 부실화되었음.
- 또한 동방생명의 경우 자산운용상 대출과 관련한 부실채권 비중이 다른 중견 8개사중에서 가장 높은 1,068억엔에 달하였음.

<표 2> 중형 생보 8개사의 97년도 상반기(4월~9월) 주요실적

(단위 : 억엔, %)

| 구 분  | 총자산            | 보험료 등<br>(수입) | 신계약            | 실효해약           |
|------|----------------|---------------|----------------|----------------|
| 太陽   | 67,618 (3.6)   | 6,171 (▲1.0)  | 10,879 (9.8)   | 4,836 (19.0)   |
| 協榮   | 55,850 (▲1.0)  | 3,965 (▲9.8)  | 40,182 (▲4.0)  | 28,860 (25.4)  |
| 大同   | 51,522 (4.3)   | 5,484 (▲2.1)  | 25,389 (8.6)   | 17,795 (21.5)  |
| 東邦   | 42,148 (▲8.5)  | 2,629 (▲13.2) | 12,985 (▲6.0)  | 24,175 (87.1)  |
| 富國   | 42,073 (4.8)   | 3,559 (▲19.9) | 19,070 (▲2.4)  | 10,566 (17.1)  |
| 日本團體 | 39,667 (▲0.9)  | 3,173 (▲1.8)  | 9,347 (▲15.6)  | 11,904 (80.1)  |
| 第百   | 31,850 (▲4.3)  | 2,288 (▲8.2)  | 13,953 (▲28.7) | 18,713 (31.0)  |
| 東京   | 14,266 (▲3.2)  | 850 (▲15.9)   | 4,536 (▲7.9)   | 5,082 (38.7)   |
| 合計   | 344,997 (▲0.1) | 28,122 (▲7.6) | 136,341 (▲5.4) | 121,931 (36.6) |

(주) ( ) 전년동기 증감임.

실효해약 및 신계약의 경우 개인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을 합한 실적임.

<표 3> 증권생보 8개사의 자산내용 (97.9말현재)

(단위 : 억円, %)

| 구분   | 上場國內株式<br>未實現損益 | 公表不實<br>債權額 | 貸損充當金 | 株式未實現利益이<br>제로가 되는 株價水準 |
|------|-----------------|-------------|-------|-------------------------|
| 太陽   | 4,667(▲7.7)     | 769(22.2)   | 16.3  | 11.000円엔                |
| 協榮   | ▲192(-)         | 305(▲0.9)   | 60.6  | 18.000円                 |
| 大同   | 688( 25.5)      | 548(6.4)    | 72.0  | 15.000円                 |
| 東邦   | 39(▲81.0)       | 1,068(78.6) | 11.7  | 17.500円                 |
| 富國   | 1,278(▲9.2)     | 340(334.3)  | 31.4  | 13.900円                 |
| 日本團體 | 366(42.9)       | 317(21.1)   | 71.2  | 16.000円                 |
| 第百   | ▲257(-)         | 671(▲9.0)   | 36.5  | 18.200円                 |
| 東京   | 118(200.0)      | 118(▲36.0)  | 27.9  | 17.600円                 |
| 合計   | 6,609(▲13.7)    | 4,138(24.9) | 34.9  | -                       |

(주) 1. 괄호의 수치는 3월말대비증감을

2. 공표부실채권액은 파산기업, 연체, 금리감면, 경영지원처채권의 합계.

3. 충당금은 공표부실채권액에 대한 채권상각특별계정잔고의 비율.

## 2) 東邦生命과 GEFA의 金融再保險去來, 營業權讓渡 內容과 展望<sup>1)</sup>

### □ 東邦生命과 GE Financial Assurance의 新規社 設立 合意

○ '98. 2. 18. 동방생명과 GE-Capital Service의 자회사인 GE Financial Assurance (본사 : 미국 버지니아주 ; GEFA)는 新規會社 設立에 合意하였음.

- 신규회사는 「GE-Capital Edison 생명보험주식회사」로 98.3.19일 면허를 취득하여 4.1일자로 영업개시함.

- 신규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440억円で, 이중 자본금은 720억엔 (GEFA각출)이고 나머지 720억원은 동방생명에서 후순위대출로 출자함.

1) 본 내용의 작성시점은 '98.4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내용 및 평가임.

□ 新規會社로의 營業權 등의 讓渡

- 동방생명은 신계약업무를 포함하여 상품, 모집인, 대리점 등과 함께 營業權을 신규회사인 에디슨생명으로 讓渡  
(※보험업법 제142조에 의거, 事業讓渡의 認可를 받음)
- 에디슨생명은 영업개시 시작부터 양수받은 지사영업망과 법인영업망을 판매채널로 전국적 營業을 開始

□ 清算會社로서의 契約・維持管理 및 資産運用

- 동방생명은 清算會社로서 존속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既存契約의 維持・管理業務와 資産運用業務를 수행.
  - 동방생명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에디슨생명으로부터 신계약의 30~50%의 共同保險式再保險을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收益源을 確保하게 됨  
(※10년간 공동재보험식으로 분배받을 수익 : 합계 약 900억円)
  - 동방생명은 신계약업무를 비롯한 營業權讓渡의 代價로 700억円을 수취.
- 동방생명의 기존계약을 에디슨생명에 契約移轉한 것은 없으므로 契約內容 등의 變更은 없음
  - 따라서, 동방생명의 현존하는 모든 보유계약에 대해서 동방생명의 파산시 GEFA 및 에디슨생명은 일체의 責任이 없음
- 에디슨생명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사무서비스를 대행
- 동방생명과 GEFA간의 금융재보험 출자, 영업권양도 등의 거래는 98.3.31까지 완료.

□ 金融再保險의 代價

- 동방생명은 금융재보험의 대가로 받게 되는 출제수수료 500억엔을 賣

任準備金 積立増額에 사용

- 日本의 대장성 通達 「財務再保險의 取扱에 關한 基本事項」에 의거,  
금융재보험 출제수수료는 전액 책임준비금 적립증액에만 사용가능.

□ 金融再保險 및 營業權 讓渡에 따른 東邦生命의 問題點 및 向後 展望

○ 不實債權의 처리 문제

- '97.9월말 현재 동방생명의 공표부실채권액은 1,068억円인데, 영업  
권양도의 대가로 수취하는 700억円등으로 처리할 계획.
- 그러나 동방생명이 에디슨생명에 720억엔을 후순위대출로 출자키  
로 함에 따라 부실채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는 금융재보험으로 받은 출제수수료를 책임준비금 적립  
증액에 사용함으로써 支給餘力을 향상시킴.
- 다만, 금융재보험으로 우량한 보험계약은 에디슨생명으로 출제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당분간은 보유계약중 대부분이 불량계약만 남게  
되어 Bad Insurance Company가 될 것임

○ 이에따라 98결산시점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보험계약이 대부분 잔류되  
어 利差損失이 대폭 발생할 것으로 보임

(※ FY96 이차손실 : 총600억円)

(※위험준비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자산에서 약1.2~1.3% 역마진  
발생)

- 신계약영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수입은 없고 보험금 및 해약환  
급금과 결산시의 적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방생명의  
壽命은 1~2년 정도 단명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결국에는 동방생명은 支給不能이 되고 그 清算은 預金保險機  
構(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임

□ 東邦生命의 破産時の 處理

- 동방생명의 파산시에 에디슨생명 및 GEFA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방생명과 GEFA의 계약체결시, 협정문안에 동방생명과 에디슨생명은 서로 독립된 회사이며 신회사는 동방생명의 손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함

□ GEFA의 利點

- GEFA는 신용카드사업이나 자동차리스 등의 對소비자금융을 일본시장에서 제공해 왔는데 금번 금융재보험거래로 일본에서 전국적인 대규모의 보험영업에 진출하게 됨

□ 日本 保險業界의 時角

- 동방생명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시 조만간에 파산할 것으로 판단.
- GEFA가 동방생명의 파산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결국에는 동방생명의 파산시 업계가 예금보험기금을 각출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표출
- 업계는 外資(GEFA)가 일본에 보험사업 진출하는데 일본보험업계가 자금을 대는 격이 되어 불만을 표출함.

※ GE Capital의 개요

- ◆ GE-Capital은 미국 General Electric의 100% 자회사로 총자산 2,500억\$의 세계최대급의 논뱅크임
- ◆ GE-Capital의 주요사업으로는 설비운영·관리, 중간시장파이낸싱, 전문적금융사업, 특수보험, 자동차리스, 주택론, 신용카드 등 폭 넓은 소매금융사업을 전개.
- ◆ GE-Capital에서 가계정보협상품은 GEFA를 통하여 제공.

## <資料 2>

### 金融再保險을 利用한 構造調整 事例

#### □ 大藏省 告示 제233호(財務再保險 規程)

##### 大藏省 告示 제233호

「보험업법시행규칙(1996년 대장성령 제5호)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장대신이 정한 재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1998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大藏大臣 松永 光

제1조(재무재보험) ①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 제71조제2항에 규정한 대장대신이 정한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보한 경우에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부분에 관계된 보험계약에서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하, 이항에서 「장래수익」 이라 한다.)을 出再保險受入手數料(수재보험회사(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원수보험회사(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보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는,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보험계약의 집단(이하 이항에서 「출재보험군단」 이라 한다.)에 관계된 장래수익을 기초로 계산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미리 수수하는 재보험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재보험회사가 국내 및 해외의 감독당국에서 재보험에 관계된 사업 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로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규칙(1973년 대장성령제5호) 제1조제13호의2에 규정하는 지정신용등급기관에서 AA- 또는 Aa3의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보험회사일 것.
  2. 원수보험회사가 수재보험회사로부터 수수하는 출재보험수입수수료는 현금에 의한 것일 것.
  3. 재보험계약은 출재보험군단이 전부 소멸한 경우, 또는 원수보험회사에 의한 증도해약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는 것일 것.
  4.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재보험회사가 일방적인 해약을 할 수 없을 것.
  5. 원수보험회사를 청산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소멸시키는 경우(원수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원수보험사는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액(출재보험수입수수료중 소멸시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해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수재보험회사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6. 원수보험회사가 합병 또는 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당해 타보험회사의 승계되는 것일 것.
  7. 원수보험회사와 수재보험회사간의 결제는 최소 3개월에 1회이상일 것.
- ② 수재보험회사가 전항제1호에 규정하는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수재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출재보험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조(종류) ①재무재보험(전조의 재보험을 말한다.)의 종류는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공동보험식재보험
2. 수정공동보험식재보험

②전조제1호의 공동보험식재보험이란, 수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계약(원수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에 관계된 리스크중 당해 재보험에 부보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출재비율(수재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인수한 보험계약의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에 따라 인수하고, 당해 인수한 부분에 관계된 책임준비금(보험업법(1995년 법률제105호)제116조에 규정한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의 적립 및 당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산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제1항제2호의 수정공동보험식재보험이란, 수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계약에 관계된 리스크중 당해 재보험에부보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출재비율에 따라 인수하고 당해 인수한 부분에 관계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원수보험사가 당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산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日本의 財務再保險 制度(通達規程)

(※ 97.12월 제정 ; 대장성고시 발동에 의해 동통달은 폐지되었으나 내용은 대부분 告示에 반영됨)

### 1) 「財務再保險」의 定義

본 通達에서 말하는 「財務再保險」이란, 원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

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당해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出再保險手數料(초년도 커미션)」로서 미리 일정액을 收受하는 것을 말한다.

(註1)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란 이하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사망율, 발생율 등 사차손익 관련 리스크
- ② 사업비 등 비차손익 관련 리스크
- ③ 투자수익 등 이차손익, 가격변동손익 관련 리스크
- ④ 해약익, 실효익 등 책임준비금 관련 리스크

(註2)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收益」이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을 통산하면 收益을 올릴 수 있다. 이 수익은 보험료수입, 이자배당금수입, 보험금지출, 사업비지출 등의 현금흐름(cash flow)으로 실현화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율, 투자수익, 사업비의 지출상황, 유지율의 변동에 따라 당초 가정한 수익이 변동할 수도 있다.

(註3) 「出再保險手數料(초년도커미션)」란, 다음과 같다.

- 출재보험군단에 관계되는 신계약비 및 장래수익의 현재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受再會社(재보험회사)와 原受會社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출재보험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수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

## 2) 「財務再保險」의 種類

「재무재보험」의 종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이전되는 다음의 2종류로 한다.

### (1) 共同保險式 再保險

受再會社(재보험회사)가 원수계약의 조건대로 출재비율에 따라 원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재회사에 의한 출재비율에 대응하는 부분의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수반하는 것(재보험계약 체결시에 出再會社は 受再會社에 責任準備金相當額の 資産을 移管한다.)

## (2) 修正共同保險式 再保險

受再會社(재보험회사)가 원수계약의 조건대로 출재비율에 따라 원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식인데, 責任準備金은 수재회사로 移管하기는 하지만 책임준비금상당액 資産의 管理는 原受會社가 행하는 것.

## 3) 「出再保險手數料」의 사용처

「출재보험수수료」의 사용처는 책임준비금적립 增額을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4) 「財務再保險」의 導入要件

### (1) 導入限度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지만, 도입취지와 收支에 미치는 영향(코스트)을 감안하여 회사 및 출재보험군단의 보수적인 장래수지분석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 (2) 受再會社(再保險會社)의 資格要件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적기관(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 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중, '企業內容 等の 公示에 關한 施行規則'(1973년 대장성령 제5호) 제1조 제13호의2에 규정된 指定信用等級機關으로부터 원칙적으로 AA 또는 Aa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고있는 보험회사로 한다.

### (3) 再保險契約書 記載事項

원수회사와 수재회사(재보험회사)간에 교환하는 재보험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수재회사로 이전될 것
- ② 수재회사는 출재보험군단에 관한 원수회사의 보험금, 급부금, 해약 환급금등의 지급에 대해 출재비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약속할 것
- ③ 「출재보험수수료」의 수수방법에 관한 사항
- ④ 재보험계약의 소멸은 출재보험군단이 全件 소멸한 경우 또는 원수회사가 중도해약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 ⑤ 수재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재보험계약의 해제는 할수 없음  
(원수회사가 재보험료를 납입치 않는 경우는 제외)
- ⑥ 원수계약이 全件 소멸한 때에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출재보험수수료의 미반환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원수회사는 수재회사에 지불할 필요가 없음
- ⑦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취급을 명확히 해야함.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됨.
  - A. 출재보험군단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수재회사에 귀속하고 원수회사에 변제를 요구할수 없을 것
  - B.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것이 少額인 경우에는 원수회사에 재보험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 C. 상기 A, B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도 출재보험계약이 보유되고 있는 한 재보험계약은 지속될 것
- ⑧ 원수회사가 支給不能이 된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
  - A. 원수회사를 청산하여 보험계약들을 전부 소멸시키는 경우(보험계약을 타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에는 잔존해 있는 出再保險群團의 損失(출재보험수수료의 미반환분을 포함)에 대해서 원수회사는 수재회사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보험회사가 경영파산한 경우 保險契約者保護에 關한 法令이 시행된 때에는 본규정을 당해법령에 의거, 개정할 것을 재보험계약서에 별도명기할 수있을 것

B.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보험계약은 원수계약을 승계한 보험회사가 승계할 것

C.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契約內容을 變更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기 B와 동일하게 할 것.

또한 재보험계약의 내용은 원수계약의 내용변경에 관계없이계약시의 약관에 의거한 보험료·보험금 지급요건대로 승계할 것

⑨ 수재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보험금 등 재보험에 관련된 채권의 취급을 재보험계약서에 규정할 것

⑩ 원수회사와 수재회사간에 결제는 적어도 4분기에 1회행할 것

## 5) 會計處理

회계처리는 종래 재보험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제표에 「출재보험수수료」에 해당하는 현재잔고를 註記하는 것으로한다.

## 6) 當局에 대한 報告

(1) 「재무재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및 「재무재보험」의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수회사가 각각 별지양식 1, 2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事前에 당국에 申告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무재보험」의 취급을 하고 있는 동안(再保險契約中)은 원수회사가 再保險收支計算書(재무재보험계약이 2이상 있는 경우는 각각)를 별지양식 3 또는 4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당국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 <別紙様式 1>

문 서 번 호

년

월 일

大藏省銀行局長귀하

보험회사명

대표자명

인

## 「財務再保險」契約締結申告書

「재무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재무재보험을 하는 이유                                              |  |
| 재보험회사명                                                    |  |
| 재보험회사의 개요<br>(신용등급 포함)                                    |  |
| 원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의<br>당해 재보험계약이외의 거래                           |  |
| 재보험계약의 형태                                                 |  |
| 재보험계약체결 예정일                                               |  |
| 출재개시 예정일                                                  |  |
| 재보험기간                                                     |  |
| 출재하는 보험종류 및 출재비율<br>(원수회사의 보유계약고중 비율)                     |  |
| 재보험회사에 이전되는 리스크 내용                                        |  |
|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의 금액                                       |  |
| 재보험료의 금액(내역 포함)                                           |  |
| 기타 재보험계약의 개요                                              |  |
| 기계약해 있는 재무재보험의 개요<br>(재보험회사명, 재보험계약체결일, 출재<br>보험수수료의 금액등) |  |
| 출재한 보험군단의 수지전망<br>(재보험기간분)                                |  |

- 주 1. 신고에 있어서는 재보험협약서의 사본 및 원수회사의 장래수지분석표를 첨부할 것
2. 이미 계약해 있는 재무재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무재보험의 계약체결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別紙様式 2>

문 서 번 호

년 월 일

大蔵省銀行局長귀하

보험회사명  
대표자명 인

「財務再保險」契約中途解約申告書

「재무재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자 다음처럼 신고합니다.

|              |       |  |
|--------------|-------|--|
| 중도해약의 이유     |       |  |
| 재보험회사명       |       |  |
| 재보험계약의 형태    |       |  |
| 재보험계약체결일     |       |  |
| 출재개시일        |       |  |
| 재보험계약의 해약예정일 |       |  |
| 출재보험의 종류     |       |  |
| 출재보험군단의 규모   | (계약시) |  |
|              | (해약시) |  |
| 청산금의 수수 개요   |       |  |

<別紙樣式 3>

再保險收支計算書(共同保險式再保險)

[재보험수지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협약<br>시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
| 출재시 책임준비금 이전액 ①                         |         |        |        |        |        |        |        |
|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 ②                       |         |        |        |        |        |        |        |
| 납입재보험료 ③                                |         |        |        |        |        |        |        |
| 재보험금(만기보험금, 급부금등을 포함) ④                 |         |        |        |        |        |        |        |
| 재보험금환급금(해약·실효환급금포함) ⑤                   |         |        |        |        |        |        |        |
| 출재보험 사업비 ⑥                              |         |        |        |        |        |        |        |
| 출재보험배당금수입(⑬-⑮-전년도⑭-16) V <sub>0</sub> ⑦ |         |        |        |        |        |        |        |
| 결제액(-①+②-③+④+⑤+⑥+⑦) ⑧                   |         |        |        |        |        |        |        |

주 : ⑦란의 전년도⑭는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  
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수재회사의 처리] (원수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수재회사에서 처리)

| 구 분                | 협약<br>시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
| 수재보험책임준비금 전입액 ⑨    |         |        |        |        |        |        |        |
| 구분 전기말 수재보험책임준비금 ⑩ |         |        |        |        |        |        |        |
| 당기말 수재보험책임준비금 ⑪    |         |        |        |        |        |        |        |
| 수재보험 예정이자 ⑫        |         |        |        |        |        |        |        |

[재보험배당금] (수재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작성)

| 구 분                               | 협약시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
| 출재보험군단의 수익(③-④-⑤-⑥-⑨) ⑬           |     |        |        |        |        |        |
| 차기이월손실(전년도⑭-⑬+⑮) V <sub>0</sub> ⑭ |     |        |        |        |        |        |
| 출재보험 납입부가보험료 ⑮                    |     |        |        |        |        |        |
| 수재회사로의 지급액(②에 관련된 반환액) 16         |     |        |        |        |        |        |
| 수재회사로의 지급누계액(②에 관련된 반환누계액) 17     |     |        |        |        |        |        |

註 : ⑭ 란의 전년도⑭ 는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  
(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別紙樣式 4>

再保險收支計算書(修正共同保險式再保險)

[재보험수지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협약시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
| 출재시 책임준비금 이전액 ①                        |     |        |        |        |        |        |
| 출재시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①과 동액) ②                |     |        |        |        |        |        |
|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 ③                      |     |        |        |        |        |        |
| 납입재보험료 ④                               |     |        |        |        |        |        |
| 재보험금(만기보험금, 급부금등을 포함) ⑤                |     |        |        |        |        |        |
| 재보험금환급금(해약·실효환급금포함) ⑥                  |     |        |        |        |        |        |
|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⑨-⑧) ⑦                      |     |        |        |        |        |        |
| 전기말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 ⑧                       |     |        |        |        |        |        |
| 당기말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 ⑨                       |     |        |        |        |        |        |
|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 이율(%) ⑩                     |     |        |        |        |        |        |
|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 지급이자(⑧×⑩) ⑪                 |     |        |        |        |        |        |
| 출재보험 사업비 ⑫                             |     |        |        |        |        |        |
| 출재보험배당금수입(⑮-⑯-전년도⑮-⑮) V <sub>0</sub> ⑬ |     |        |        |        |        |        |
| 결제액(-①+②+③-④+⑤+⑥+⑦-⑪+⑫+⑬) ⑭            |     |        |        |        |        |        |

주 : ⑩란은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용실적수익율등)임

⑬란의 (전년도 ⑮)은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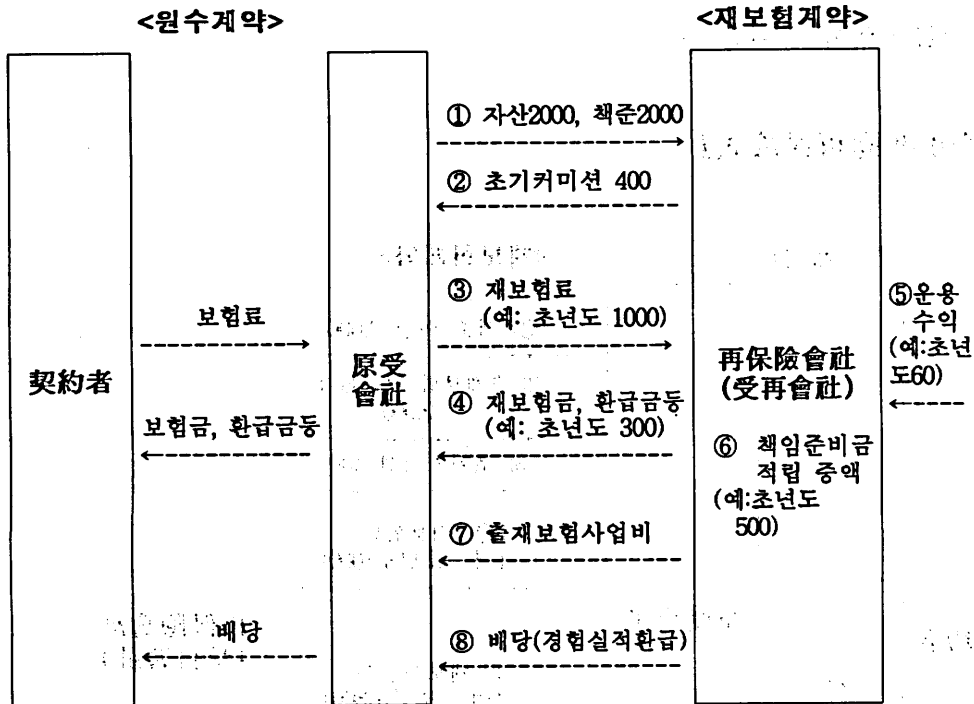
[재보험배당금] (수재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작성)

| 구 분                                  | 협약시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년<br>도 |
|--------------------------------------|-----|--------|--------|--------|--------|--------|
| 출재보험군단의 수익(④-⑤-⑥-⑦+⑪-⑫) ⑮            |     |        |        |        |        |        |
| 차기이월손실(전년도 16-⑮+17) V <sub>0</sub> ⑯ |     |        |        |        |        |        |
| 출재보험 납입부가보험료 ⑰                       |     |        |        |        |        |        |
| 수재회사로의 지급액(③에 관련된 반환액) ⑱             |     |        |        |        |        |        |
| 수재회사로의 지급누계액(③에 관련된 반환누계액) ⑲         |     |        |        |        |        |        |

주 : ⑯란의 전년도 ⑮)은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 既契約블력의 出再 事例

### 【共同再保險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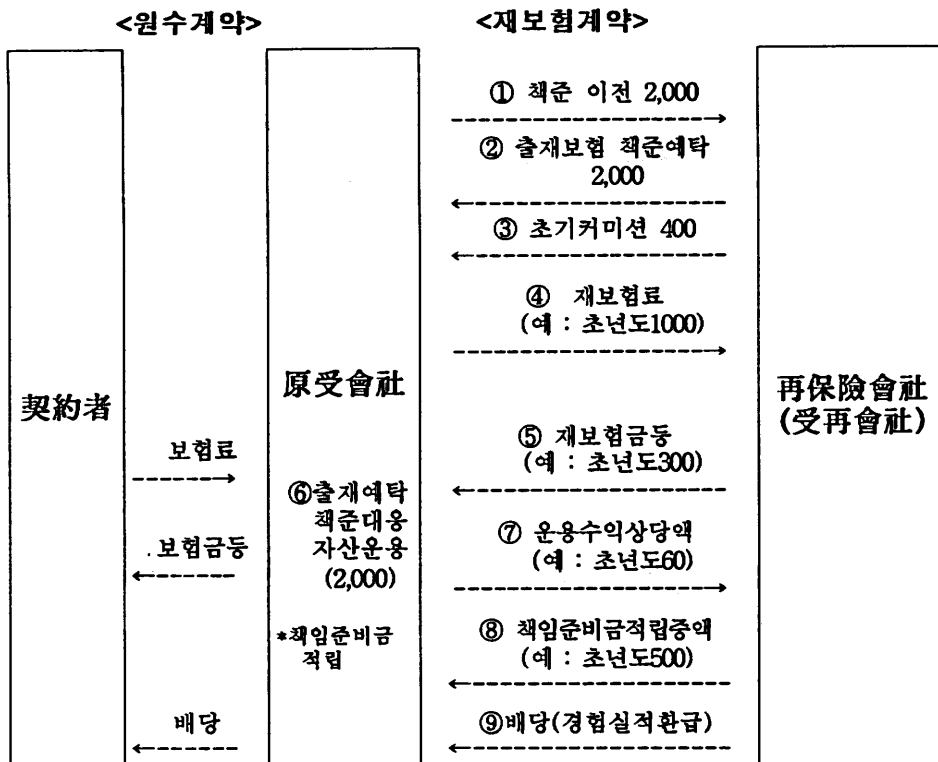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자산 2,000(책준상당)과 책임준비금 2,000을 수재 회사에 이전하며, 책임준비금은 수재 회사에 적립됨
  - ②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 회사로부터 원수 회사에 지급됨
  - ③ 계약체결 이후 보험료는 원수 회사로부터 수재 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④ 보험금, 환급금등은 수재 회사로부터 원수 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⑤ 수재 회사에서는 책임준비금대용자산을 운용하여 수익 얻음
  - ⑥ 수재 회사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증액을 함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

수익이 60, 책임준비금적립중액이 500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수재 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

- ⑦ 수재회사가 원수회사에 보험사무관리대행에 대한 대가로 출재보험사  
업비 지급
- ⑧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  
당금으로서 이익을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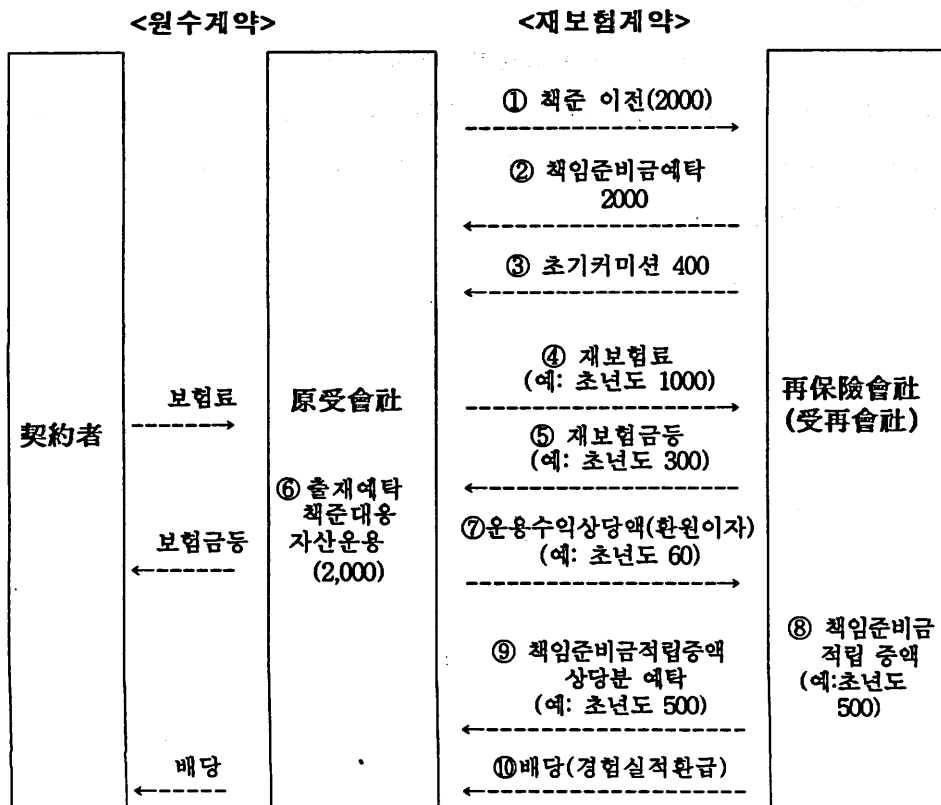
### 【修正共同再保險式】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책임준비금(2,000)을 수재회사에 이전
- ② 수재회사는 원수회사에 수재받은 책임준비금(2,000)을 예탁함. 결과적으로,  
자산은 원수회사에 殘留됨
- ③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사에 지급됨

- ④ 계약체결후 보험료는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⑤ 보험금 등은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⑥ 출재예탁받은 책임준비금대응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운용함
- ⑦ 발생한 운용수익액이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지급됨
- ⑧ 책임준비금積立増額 상당액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지급됨
  - 원수회사에서 책임준비금적립이 중액됨
- ⑨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당금으로서 환원.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수익 상당액이 60, 책임준비금적립증액 상당액이 500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수재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

### 【責任準備金の 預託을 수반하는 共同再保險式】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책임준비금(2,000)을 수재회사에 이전
  - ② 수재회사는 원수회사에 수재받은 책임준비금(2,000)을 예탁함. 이때문에 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소유되고 또한 원수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再保險 借 2000이 계상됨
  - ③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지급됨
  - ④ 계약체결후 보험료는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⑤ 보험금 등은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⑥ 출재예탁받은 책임준비금대용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운용함
  - ⑦ 발생한 운용수익 상당액이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지급됨
  - ⑧ 수재회사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중액함
  - ⑨ 책임준비금적립중액 상당액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예탁됨.
  - ⑩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당금으로서 환원.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수익 상당액이 60, 책임준비금적립중액이 500이라면, 그 결과 수재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또한 책임준비금적립중액 상당액 예탁은 현금의 이동일 뿐 손익은 아님)